

2022년도 시민협력국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I. 예산개요

1. 세입예산

■ 2022년도 시민협력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1년도 최종 예산(58억 3천 4백만원) 대비 23.6% 증액된 72억 1천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1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5,834,259	5,834,259	7,210,287	1,376,028	1,376,028	23.6	23.6
세외수입	5,834,259	5,834,259	7,210,287	1,376,028	1,376,028	23.6	23.6
경상적세외수입	1,603,577	1,603,577	1,879,413	275,836	275,836	17.2	17.2
재산임대수입	330,628	330,628	384,661	54,033	54,033	16.3	16.3
사 용 료 수 입	986,218	986,218	1,026,670	40,452	40,452	4.1	4.1
이 자 수 입	286,731	286,731	468,082	181,351	181,351	63.2	63.2
임시적세외수입	4,220,310	4,220,310	5,319,795	1,099,485	1,099,485	26.1	26.1
보조금반환수입	3,193,696	3,193,696	4,647,060	1,453,364	1,453,364	45.5	45.5
기 타 수 입	722,916	722,916	2,526	△720,390	△720,390	△99.7	△99.7
지난연도수입	303,698	303,698	670,209	366,511	366,511	120.7	120.7
지방행정제재 · 부 과 금	10,372	10,372	11,079	707	707	6.8	6.8
변 상 금	10,372	10,372	11,079	707	707	6.8	6.8

2. 세출예산

■ 시민협력국 소관 2022년 세출예산은 397억 9백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782억 6천 6백만원 대비 49.3% 감액된 수준이며, 2021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778억 2천 9백만원 대비 49.0%가 감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1년 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78,265,853	77,829,210	39,708,866	△38,556,987	△38,120,344	△49.3	△49.0
행정관리	소 계	78,265,853	77,829,210	39,708,866	△38,556,987	△38,120,344	△49.3	△49.0
	행정운영경비	429,087	429,087	352,417	△76,670	△76,670	△17.9	△17.9
	사업비	77,836,766	77,400,123	39,356,449	-38,480,317	-38,043,674	△49.4	△49.2

〈 2022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1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1 예산		2022 예산	2021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합 계	78,265,853	77,829,210	39,708,866	△38,556,987	△38,120,344	△49.3	△49.0
시민참여과	4,535,860	4,241,757	2,022,480	△2,513,380	△2,219,277	△55.4	△52.3
시민참여도시 실현	4,405,240	4,111,137	1,867,878	△2,537,362	△2,243,259	△57.6	△54.6
시민참여 기반 조성	4,405,240	4,111,137	1,867,878	△2,537,362	△2,243,259	△57.6	△54.6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	751,274	721,274	361,650	△389,624	△359,624	△51.9	△49.9
서울상생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0	0	200,000	200,000	200,000	산규	산규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829,200	629,200	790,300	△38,900	161,100	△4.7	25.6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관리	235,479	235,479	214,411	△21,068	△21,068	△8.9	△8.9
민주시민교육 추진	1,847,287	1,847,287	182,517	△1,664,770	△1,664,770	△90.1	△90.1
서울시민 행복증진	464,000	434,000	119,000	△345,000	△315,000	△74.4	△72.6
시민토론회 100인 100색	165,000	165,000	0	△165,000	△165,000	△100.0	△100.0
민주시민교육과 모더레이터 양성 프로그램	113,000	78,897	0	△113,000	△78,897	△100.0	△100.0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1 예산		2022 예산	2021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행정운영경비	130,620	130,620	154,602	23,982	23,982	18.4	18.4
기본경비	130,620	130,620	154,602	23,982	23,982	18.4	18.4
기본경비	130,620	130,620	154,602	23,982	23,982	18.4	18.4
시민숙의예산과	1,799,673	1,579,673	1,182,883	△616,790	△396,790	△34.3	△25.1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1,758,816	1,538,816	1,142,026	△616,790	△396,790	△35.1	△25.8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1,758,816	1,538,816	1,142,026	△616,790	△396,790	△35.1	△25.8
시민숙의예산 운영	1,052,846	872,846	512,502	△540,344	△360,344	△51.3	△41.3
시민참여예산 운영	526,970	486,970	363,524	△163,446	△123,446	△31.0	△25.4
예산학교 운영	170,000	170,000	160,000	△10,000	△10,000	△5.9	△5.9
시민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9,000	9,000	6,000	△3,000	△3,000	△33.3	△33.3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 운영	0	0	100,000	100,000	100,000	100	100
행정운영경비	40,857	40,857	40,857	0	0	0	0
기본경비	40,857	40,857	40,857	0	0	0	0
기본경비	40,857	40,857	40,857	0	0	0	0
지역공동체과	30,511,271	30,645,781	12,096,418	△18,414,853	△18,549,363	△60.4	△60.5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30,699,658	30,596,608	16,854,545	△13,082,813	△13,144,813	△43.7	△43.8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30,478,094	30,612,604	12,063,241	△18,414,853	△18,549,363	△60.4	△60.6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8,751,183	8,812,593	2,883,512	△5,867,671	△5,929,081	△67.1	△67.3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454,600	454,600	146,500	△308,100	△308,100	△67.8	△67.8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4,066,896	4,066,896	2,810,000	△1,256,896	△1,256,896	△30.9	△30.9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8,050,000	8,050,000	1,220,000	△6,830,000	△6,830,000	△84.8	△84.8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5,368,796	5,368,796	5,003,229	△365,567	△365,567	△6.8	△6.8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지원	9,000	9,000	0	△9,000	△9,000	△100	△100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	3,777,619	3,750,719	0	△3,777,619	△3,750,719	△100	△100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0	100,000	0	0	△	-	△100
행정운영경비	33,177	33,177	33,177	-	-	-	-
기본경비	33,177	33,177	33,177	-	-	-	-
기본경비	33,177	33,177	33,177	-	-	-	-
사회협력과	10,955,932	10,892,932	7,185,710	△3,770,222	△3,707,222	△34.4	△34.0
사회협력을 통한 상생도시 구현	10,806,708	10,743,708	7,118,329	△3,688,379	△3,625,379	△34.1	△33.7
사회협력 기반 조성 및 확산	10,806,708	10,743,708	7,118,329	△3,688,379	△3,625,379	△34.1	△33.7
서울혁신파크 운영	7,066,795	7,066,795	5,876,129	△1,190,666	△1,190,666	△16.8	△16.8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443,497	443,497	200,000	△243,497	△243,497	△54.9	△54.9
공유서울 확산	1,004,500	1,004,500	735,700	△268,800	△268,800	△26.8	△26.8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560,436	437,436	245,500	△314,936	△191,936	△56.2	△43.9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1 예산		2022 예산	2021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기부 및 사회 협력 활성화	66,200	66,200	61,000	△5,200	△5,200	△7.9	△7.9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사업	824,000	824,000	-	△824,000	△824,000	△100.0	△100.0
사회문제 해결력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	157,280	157,280	-	△157,280	△157,280	△100.0	△100.0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지방행정 혁신역량 강화사업)	0	60,000	-	-	-		△100.0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운영	484,000	484,000	-	△484,000	△484,000	△100.0	△100.0
동단위 전환 마을 지원 사업 (지역순환 경제기반 조성)	200,000	200,000	-	△200,000	△200,000	△100.0	△100.0
행정운영경비	149,224	149,224	67,381	△81,843	△81,843	△54.8	△54.8
기본경비	149,224	149,224	67,381	△81,843	△81,843	△54.8	△54.8
기본경비	149,224	149,224	67,381	△81,843	△81,843	△54.8	△54.8
갈등관리협치과	30,463,117	30,469,067	17,221,375	△13,241,742	△13,247,692	△43.5	△43.5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30,387,908	30,393,858	16,854,545	△13,533,363	△13,539,313	△44.5	△44.5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653,300	597,250	310,430	△342,870	△286,820	△52.5	△48.0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61,000	44,950	126,430	65,430	81,480	107.3	181.3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123,500	123,500	93,500	△30,000	△30,000	△24.3	△24.3
서울갈등포럼 운영 ※기존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사업에서 행사성사업으로 사업분리	-	-	90,500	90,500	90,500	100.0	100.0
갈등관리 역량강화	40,140	40,140	0	△40,140	△40,140	△100.0	△100.0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177,641	137,641	0	△177,641	△137,641	△100.0	△100.0
갈등관리 실태평가	28,719	28,719	0	△28,719	△28,719	△100.0	△100.0
갈등대안 마련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운영	222,300	222,300	0	△222,300	△222,300	△100.0	△100.0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29,734,608	29,796,608	16,523,545	△13,211,063	△13,273,063	△44.4	△44.5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2,155,349	2,155,349	1,278,540	△876,809	△876,809	△40.7	△40.7
서울시 권역 NPO지원센터 조 성 및 운영	1,982,657	1,982,657	750,871	△1,231,786	△1,231,786	△62.1	△62.1
NPO입주협업공간 운영	156,752	237,252	168,464	11,712	△68,788	7.5	△29.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2,129,500	2,111,000	2,128,820	△680	17,820	0.0	0.8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357,600	357,600	152,450	△205,150	△205,150	△57.4	△57.4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1 예산		2022 예산	2021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지원							
지역사회혁신계획 (구단위계획형) 지원	22,450,000	22,450,000	12,375,400	△10,074,600	△10,074,600	△44.9	△44.9
협치역량평가를 반영한 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7,250	7,250	0	△7,250	△7,250	△100.0	△100.0
지역협치 활성화	495,500	495,500	0	△495,500	△495,500	△100.0	△100.0
행정운영경비	75,209	75,209	56,400	△18,890	△18,890	△25.1	△25.1
기본경비	75,209	75,209	56,400	△18,890	△18,890	△25.1	△25.1
기본경비	75,209	75,209	56,400	△18,890	△18,890	△25.1	△25.1

II.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검토

■ 2022년도 시민협력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1년도 최종 예산(13억 7천 6백만원) 대비 23.6% 증액된 72억 1천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1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5,834,259	5,834,259	7,210,287	1,376,028	1,376,028	23.6%	23.6%
세외수입	5,834,259	5,834,259	7,210,287	1,376,028	1,376,028	23.6%	23.6%
경상적세외수입	1,603,577	1,603,577	1,879,413	275,836	275,836	17.2%	17.2%
재산임대수입	330,628	330,628	384,661	54,033	54,033	16.3%	16.3%
공유재산임대료	330,628	330,628	384,661	54,033	54,033	16.3%	16.3%
사 용 료 수 입	986,218	986,218	1,026,670	40,452	40,452	4.1%	4.1%
기타사용료	986,218	986,218	1,026,670	40,452	40,452	4.1%	4.1%
이 자 수 입	286,731	286,731	468,082	181,351	181,351	63.2%	63.2%
기타이자수입	286,731	286,731	468,082	181,351	181,351	63.2%	63.2%
임시적세외수입	4,220,310	4,220,310	5,319,795	1,099,485	1,099,485	26.1%	26.1%
보조금반환수입	3,193,696	3,193,696	4,647,060	1,453,364	1,453,364	45.5%	45.5%
사회보조금반환수입	3,193,696	3,193,696	4,134,370	940,674	940,674	29.5%	29.5%
자체보조금반환수입	-	-	512,690	512,690	512,690	-	-
기 타 수 입	722,916	722,916	2,526	△720,390	△720,390	△99.7%	△99.7%
그 외 수 입	722,916	722,916	2,526	△720,390	△720,390	△99.7%	△99.7%
지난연도수입	303,698	303,698	670,209	366,511	366,511	120.7%	120.7%
지난연도수입	303,698	303,698	670,209	366,511	366,511	120.7%	120.7%
지방행정제재 · 부 과 금	10,372	10,372	11,079	707	707	6.8%	6.8%
변 상 금	10,372	10,372	11,079	707	707	6.8%	6.8%
변 상 금	10,372	10,372	11,079	707	707	6.8%	6.8%

1) 경상적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16억 3백만원) 대비 17.2%(2억 7천 6백만원) 증액한 18억 7천 9백만원 규모이며,

〈 2022회계연도 시민협력국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 편성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21년도(최종)	2022년도	2021년 대비 증감	증감률
경상적세외수입	1,603,577	1,879,413	275,836	17.2%
재산임대수입	330,628	384,661	54,033	16.3%
사용료수입	986,218	1,026,670	40,452	4.1%
이자수입	286,731	468,082	181,351	63.2%

-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로 커뮤니티공간 운영지원사업인 마을활력소 임대료 1천 4백만원과 서울혁신파크 사용료 3억 7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3억 3천만원) 대비 16.3%(5천 4백만원) 증액한 3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2회계연도 시민협력국 소관 공유재산임대료 편성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21년도(최종)	2022년도	2021년 대비 증감	증감률
재산임대수입	330,628	384,661	54,033	16.3%
공유재산임대료	330,628	384,661	54,033	16.3%

- 한편, 시민협력국은 2021년도 재산임대수입으로 ‘광진구 구의2동 마을활력소’에 대하여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평가예상액(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임대료 75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나, 동 마을활력소 조성 일정이 지연되어 2022년 말로 개관이 연기됨에 따라 전액 징수된 바 없으므로,

- 시민협력국은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예산에 대해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 후 적절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을활력소 임대료 수입의 2021년 징수전망〉

◆ **2021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해당사항 없음

※ 공간 조성일정이 지연되어 개관일이 `22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21년 임대료 미징수 예정

출처 : 시민협력국 제출자료(2022년도 세입추계자료)

〈마을활력소 임대료 수입의 2022년 세입추계〉

◆ **2022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1년 추계액 : 14,159천원

- **산출내역**

① 광진구 구의2동 마을활력소 : 8,608천원

[992,920천원(토지가)+ 40,000천원(건물가)]*10/1000*10/12(개월)

* 건물가 : 40,000천원(인근 유사건물 시가표준액 참고)

② 금천구 독산2동 마을활력소 : 2,370천원

[210,620천원(토지가)+ 500,349천원(건물가)]*10/1000*4/12(개월)

③ 서초구 양재1동 마을활력소 : 3,181천원

[1,894,488천원(토지가)+ 13,755천원(건물가)]*10/1000*2/12(개월)

출처 : 시민협력국 제출자료(2022년도 세입추계자료)

〈서울혁신파크 사용료 수입의 2021년 징수전망〉

◆ 2021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단위: 천원)

- 2021년 전망액 : 326,394
- 산출내역: ①359,711(시유재산 임대료) - ②33,317(소상공인 사용료 감면액)
 - 시유재산 임대료(미래청, 상상청 등)=395,682('21년 사용료) - 35,971(부가가치세)
 - 코로나19 피해관련 소상공인 3차 사용료 감면(1~6월) 지원액: 33,317

출처 : 시민협력국 제출자료(2022년도 세입추계자료)

〈서울혁신파크 사용료 수입의 2022년 세입추계〉

◆ 2022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단위: 천원)

- 2022년 추계액: 370,502
- 산출내역: 407,552('21년 사용료 부과액 × 사용료 상승분) - 37,050(부가가치세)

출처 : 시민협력국 제출자료(2022년도 세입추계자료)

- 정상적 세외수입 중 시비보조금 및 민간보조금 이자 반납 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기타이자수입'은 2021년 2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은 5억 8천 8백만원으로 편성액 대비 105.1%로 과도하며, 2022년도 '기타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63.2%(1억 8천 1백만원) 증액한 4억 6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2회계연도 시민협력국 소관 '기타이자수입' 편성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21년도(최종)	2022년도	2021년 대비 증감	증감률
사용료수입	286,731	468,082	181,351	63.2%
기타사용료	286,731	468,082	181,351	63.2%

〈 최근 5년간 ‘기타이자수입’ 징수 현황 〉

(단위:천원)

예산과목	편성내역	징수결정액	징수액	이월액 (결산전망)
이자수입	370,178	991,023	699,183	644,077
기타이자수입	370,178	991,023	699,183	644,077
2021년	286,731	588,023	363,951	576,309
2020년	75,447	298,336	267,309	31,027
2019년	8,000	76,464	55,600	20,864
2018년	-	25,698	9,931	15,767
2017년	-	2,502	2,392	110

출처 : 시민협력국 제출자료(2022년도 세입추계자료)

-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민협력국은 세입 발생 사안별로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세입추계를 통해 보다 면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임시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42억 2천만원) 대비 26.1%(10억 9천 9백만원) 증액한 53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2022회계연도 시민협력국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 편성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21년도(최종)	2022년도	2021년 대비 증감	증감률
임시적세외수입	4,220,310	5,319,795	1,099,485	26.1%
보조금반환수입	3,193,696	4,647,060	1,453,364	45.5%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3,193,696	4,134,370	940,674	29.5%
자체보조금반환수입	-	512,690	512,690	-
기 타 수 입	722,916	2,526	△720,390	△99.7%
지 난 연 도 수 입	303,698	670,209	366,511	120.7%

- 임시적 세외수입 중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은 대부분 자치구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커뮤니티공간 운영지원 사업 집행잔액(2억 6천 5백만원)”,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5억 3천만원)”,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집행잔액(3억 7천 4백만원)”,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집행잔액(6억 9천 7백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집행잔액(248만원)” 등 전년(31억 9천 4백만원) 대비 29.5%(9억 4천만원) 증액한 41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징수 현황 〉

(단위:천원)

예산과목	편성내역	징수결정액	징수액	이월액 (결산전망)
시·도반환금수입	7,089,831	15,701,847	12,466,701	9,655,136
2021년	3,193,696	8,927,077	6,610,974	8,736,092
2020년	2,692,455	2,143,509	2,001,815	141,694
2019년	838,680	2,690,023	2,179,560	510,463
2018년	365,000	1,232,969	1,054,154	178,815
2017년	-	708,269	620,198	88,072

출처 : 시민협력국 제출자료(2022년도 세입추계자료)

-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은 매년 예산 편성과 결산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의 정확한 정산과 함께 매년 세입 처리 규모 등을 감안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근본적으로 보조금 교부 당시부터 정확한 보조금 규모의 파악을 통해 교부함으로써 불필요한 반환금 발생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은 연가보상비, 출장여비 등 반납금과 같은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과 기타 잡수입 등으로 전년(7억 2천 3백만원) 대비 99.7%(7억 2천만원) 감액한 253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2022회계연도 시민협력국 소관 ‘기타수입’ 편성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21년도(최종)	2022년도	2021년 대비 증감	증감률
기타수입	722,916	2,526	△720,390	△99.7%
그외수입	722,916	2,526	△720,390	△99.7%

○ 2021년도 ‘그외수입’ 예산 편성액은 7억 2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22년부터 민간보조금 집행잔액을 ‘자체보조반환금수입’으로 변경함에 따라 ‘그외수입’에 대한 반환액이 없을 것으로 편성하였음.

○ 시민협력국은 세입 추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세원의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적정 규모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동 규칙에 따라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 종합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세입편성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4조(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稅外收入)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 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그외수입(갈등관리협치과)' 2021년 징수전망〉

◆ 2021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21년 전망액 : 35,617천원
- 산출내역
 - '20년 동남권NPO지원센터 집행잔액 반납금: 524천원
 - '20년 동북권NPO지원센터 임대차보증금 반납금 : 35,000천원
 - ※ '20년 서울시NPO지원센터 집행잔액은 당해연도 반납 완료로 세출과목 여입조치함
 - ※ '20년 동북권NPO지원센터 집행잔액은 당해연도 반납 완료로 세출과목 여입조치함
 -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0년 연가보상비 반납금 : 63천원
 -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19년 출장여비 오지급건 반납금 : 30천원

출처 : 시민협력국 제출자료(2022년도 세입추계자료)

〈'그외수입(갈등관리협치과)' 2022년 세입추계〉

◆ 2022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2년 추계액 : 186천원
- 산출내역
 -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1년 연가보상비, 출장여비 등 반납금: 186천원
 - '21년 상반기 기준 수납액인 93천원×2 = 186천원
 - ※ NPO지원센터 집행잔액은 당해연도 반납처리가 원칙이므로 '22년 그외수입 발생액 없음

출처 : 시민협력국 제출자료(2022년도 세입추계자료)

〈'그외수입(갈등관리협치과)'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104,000	102,220	138,260	120,517	94,221	149,976	129,298	35,617	35,617

※ 2020년 결산까지는 민간보조금 집행잔액이 그외수입으로 포함되어있음

※ 출처 : 시민협력국 제출자료(2022년도 세입추계자료)

2. 세출예산 검토

- 시민협력국 소관 2022년 세출예산은 397억 9백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782억 6천 6백만원 대비 49.3% 감액된 수준이며, 2021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778억 2천 9백만원 대비 49.0%가 감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1년 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78,265,853	77,829,210	39,708,866	△38,556,987	△38,120,344	△49.3%	△49.0%	
행정관 리	소 계	78,265,853	77,829,210	△38,556,987	△38,120,344	△49.3%	△49.0%	
	행정운영경비	429,087	429,087	352,417	△76,670	△76,670	△17.9%	△17.9%
	사 업 비	77,836,766	77,400,123	39,356,449	-38,480,317	-38,043,674	△49.4%	△49.2%

- 시민협력국은 시민참여 확대와 협치를 통한 시민참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2회계연도에 5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을 설정하고, 30개 세부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된 사업은 없고, 증액사업 4건(2억 6천 8백만원), 감액사업 39건(△389억 4천 8백만원), 신규사업 1건(2억원) 등임.

(단위 : 천원)

정책/단위/사업별	2021 예산		2022 예산	2021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합 계	78,265,853	77,829,210	39,708,866	△38,556,987	△38,120,344	△49.3	△49.0
시민참여도시 실현	4,405,240	4,111,137	1,867,878	△2,537,362	△2,243,259	△57.6	△54.6
시민참여 기반 조성	4,405,240	4,111,137	1,867,878	△2,537,362	△2,243,259	△57.6	△54.6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1,758,816	1,538,816	1,142,026	△616,790	△396,790	△35.1	△25.8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1,758,816	1,538,816	1,142,026	△616,790	△396,790	△35.1	△25.8

정책/단위/사업별	2021 예산		2022 예산	2021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30,699,658	30,596,608	16,854,545	△3,082,813	△3,144,813	△43.7	△43.8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30,478,094	30,612,604	12,063,241	△8,414,863	△8,549,363	△60.4	△60.6
사회협력을 통한 상생도시 구현	10,806,708	10,743,708	7,118,329	△3,688,379	△3,625,379	△34.1	△33.7
사회협력 기반 조성 및 확산	10,806,708	10,743,708	7,118,329	△3,688,379	△3,625,379	△34.1	△33.7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30,387,908	30,393,858	16,854,545	△3,533,363	△3,539,313	△44.5	△44.5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653,300	597,250	310,430	△342,870	△286,820	△52.5	△48.0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29,734,608	29,796,608	16,523,545	△3,211,063	△3,273,063	△44.4	△44.5
행정운영경비(시민협력국)	429,087	429,087	352,417	△76,670	△76,670	△17.9	△17.9

〈2022회계연도 시민협력국 소관 신규 및 증·감액 사업 현황〉

○ 신규사업 현황 : 총 1개 사업, 200백만원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2년도	편성 사유
1	서울상생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200,000	사회적 자본 조성을 위한 상생네트워크 구축 사업

○ 주요 증액사업 현황(20%)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1년도	2022년도	증감		증액사유
				증 감	비율(%)	
1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61,000	126,430	65,430	107.3	기존 '갈등관리 역량강화,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갈등관리 실태평가 사업'을 포괄 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함
2	서울갈등포럼 운영	0	90,500	90,500	100.0	기존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사업에서 행사운영비 사업 별도 분리

○ 주요 감액사업 현황(20%)

연번	사업명	2021년도	2022년도	증감		감액사유
				증 감	비율(%)	
1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	751,274	361,650	△389,624	△51.9	'21.7.24. 합의제행정기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존속기한 만료 및 서울시민회의를 공론화 사업인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으로 통합 편성
2	민주시민교육 추진	1,847,287	182,517	△1,664,770	△90.1	'독도전시관, 체험관 공간 조성 사업 지원 완료(1,200,000천원)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사업 중 중복, 공모, 용역 성격 사업 폐지 등으로 사업비 조정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사업 수 조정 및 위탁기간 종료('22년 9월)로 인건비, 운영비 등 조정
3	서울시민 행복증진	464,000	119,000	△345,000	△74.4	용역 완료에 따른 연구 용역비 감액,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 중단(서울시민 행복증진을 위해 시 직접 사업 예산 편성)
미편성	시민토론회 100인 100색	165,000	-	△165,000	△100.0	시민참여예산(단년도 사업)
미편성	민주시민교육과 모더레이터 양성 프로그램	113,000	-	△113,000	△100.0	시민참여예산(단년도 사업)
4	시민숙의예산 운영	1,052,846	512,502	△540,344	△51.3	민관협 운영비 해당실국 편성 및 국제행사 개최 종료 등
5	시민참여예산 운영	526,970	363,524	△163,446	△31.0	민관협 운영비 해당실국 편성 및 행사 사업(한마당총회) 분리
6	시민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9,000	6,000	△3,000	△33.3	최근 3년 집행률 고려하여 감액
7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8,751,183	2,883,512	△5,867,671	△67.1	공사 공정률에 따른 자본보조금 조정 반영 및 코로나 19 장기화 감안, 사업 예산일부조정
8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454,600	146,500	△308,100	△67.8	마을로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사업 지원비 전액 감축
9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4,066,896	2,810,000	△1,256,896	△30.9	시 및 자치구 중간지원조직과 유사, 중복 사업 조정 및 이관, 일부 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조정 사업규모조정때문에인건비, 일반수용비및공공요금등조정 조정

미편성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지원(마을분야)	9,000	-	△9,000	△100.0	한시사업에 따른 사업 종료
10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8,050,000	1,220,000	△6,830,000	△84.8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자치구별 자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전액 감축
미편성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	3,777,619	-	△3,777,619	△100.0	시비 지원 중단하고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으로 통합
11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443,497	200,000	△243,497	△54.9	사업시행규모 축소
미편성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	824,000	-	△824,000	△100.0	동북권사업과에 추진중인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후 추진 방향 검토
12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560,436	245,500	△314,936	△56.2	서울창의상 조례 개정에 따른 축소 운영 (연 2회→연 1회)
미편성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	157,280	-	△157,280	△100.0	시민 참여율이 저조하고, 자기계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타 교육 프로그램(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모두의 학교, 서울시민대학 등)과 중복성을 고려
13	공유서울 확산	1,004,500	735,700	△268,800	△26.8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간/자치구 지원규모 축소
미편성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운영	484,000	-	△484,000	△100.0	집행률 저조 및 타부서 사업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전액 미반영
미편성	지역순환 경제기반 조성	200,000	-	△200,000	△100.0	자치구별 지역 주도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서울 조성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내용 및 추진 방식 등의 재검토 필요
14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2,155,349	1,278,540	△876,809	△40.7	공모사업, 연구용역사업 등 센터 기능에 맞지 않는 사업 등 감액 조정 및 이에 따른 인건비 조정(17명→10명), 운영비 조정
15	서울시 권역 NPO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1,982,657	750,871	△1,231,786	△62.1	공모사업, 연구용역사업 등 센터기능에 맞지 않는 사업 등 감액 조정 및 이에 따른 인건비 조정 (센터별 5명→2명), 운영비 조정
16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364,850	152,450	△212,400	△58.2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종료 및 협치분과 운영 폐지, 협치학교 운영 축소 등

17	지역사회혁신계획 (구단위계획형) 지원	22,645,500	12,375,400	△10,270,100	△45.4	'협치기반구축 사업(협치체계 운영경비)'은 자치구 주도성 제고를 위해 시비 지원 종료, '분야별 협치 사업'예산은 전년도 집행률을 고려하여 80%수준으로 조정 감액
18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123,500	93,500	△30,000	△24.3	갈등영향분석 건수를 3건에서 2건으로 조정하여 감액
미편성	협치역량평가를 반영한 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7,250	0	△7,250	△100.0	'22년부터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
미편성	지역협치 활성화	495,500	0	△495,500	△100.0	'21년 민민협력기반조성사업(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종료되어 '지역사회혁신계획(구 단위계획형)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통합하여 편성
미편성	갈등관리 역량강화	40,140	0	△40,140	△100.0	'22년부터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
미편성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177,641	0	△177,641	△100.0	'22년부터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
미편성	갈등관리 실태평가	28,719	0	△28,719	△100.0	'22년부터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
미편성	갈등대안 마련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운영	222,300	0	△222,300	△100.0	부서통폐합으로 국내 공론화 사업 중복으로 사업 종료

1) 신규 사업

- 시민협력국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서울상생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음.

〈2022회계연도 시민협력국 신규사업 현황〉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2022년도	편성 사유
1	서울상생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200,000	사회적 자본 조성을 위한 상생네트워크 구축 사업

- 본 사업은 사회적 자본 조성을 위해 상생협력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서울상생네트워크를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협력국은 공익적 가치가 있는 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

〈'서울상생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사업 예산편성 내역〉

(단위:천원)

구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200,000	(x-) 200,000	(x-) 100
사무관리비	(x-) 0	(x-) 0	(x-) 200,000	(x-) 200,000	(x-) 100

- 동 사업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공동 해결하는 공공·시민·기업 간 상생협력 실천으로 시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바, 시민협력국이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민 행복증진'사업 내용과 일정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사업과의 통합 여부와 신규 사업 편성을 통한 사업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상생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공공-시민-기업 간 상생협력 실천으로 사회적 신뢰와 가치확산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로 공익적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생활속 실천 아이디어 발굴로 시민의 적극참여와 자발적 확산 분위기 조성

□ 사업근거

- 서울상생네트워크 구축 계획(2021.10.)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의 주요내용
 - 상생네트워크 구축 사업
 - 시민상생 캠페인 실시
 - 시민상생 사례확산 등 성과공유회
 - 시민상생 캠페인 관련 사업 홍보

□ 향후 기대효과

- 공익적 가치가 있는 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
- 다양한 사회문제를 공동 해결하는 사회적 자본 마련으로 시민행복 증진

〈 ‘서울시민 행복증진’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시민의 행복 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민 행복 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행복 정책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19.1.제정, 20.1. 시행)

□ 사업내용

- 시민 행복 증진 기본계획 : 기본 방향, 목표 및 추진 전략, 분야별 주요시책 및 추진체계 등
- 시민행복위원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실태조사의 활용 및 분석 평가,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행복지표관리 : 정기적 행복만족도 지수화, 실태조사 및 결과공표

- 협력체계 구축 : 국내외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행복 증진 사업 공동 추진 또는 협력
- 행복증진 교육 : 시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복증진 교육 실시
- 전략 과제 추진 :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시민 행복 증진 관련 전략 사업 추진

□ **향후 기대효과**

- 행복 격차를 완화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행복 취약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으로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또한, 동 사업은 ‘서울상생네트워크 구축 계획(2021.10.)’에 사업 근거를 두고 있는 바, 조례 제정 또는 시민협력국 소관 조례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사실상 ‘자문회의’를 운영하는 것이나, 법령(「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과 조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라고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근거를 마련한 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산하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상생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예산 세부산출 내역 〉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상생 캠페인 실시 50,000,000원*2회(반기별) = 100,000천원 ○ 시민상생 홍보활동 = 40,8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동영상 제작 10,000,000원*2편 = 20,000천원 - 포스터, 리플릿, 카드뉴스 등 제작 10,000,000원*2회 = 20,000천원 - 기타 운영경비 400,000원*2회 = 8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자문회의 운영</u> = <u>7,200천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전문가 자문수당</u> <u>150,000원* 4인* 6회</u> = <u>3,600천원</u> - 필요물품 구입 등 운영비 300,000원*6회 = 1,800천원 - 회의자료 인쇄비 등 300,000원*6회 = 1,8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조사(온라인, FGI 등) 실시 22,000,000원*1회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 22,000천원 ○ 사례확산 성과공유회 = 30,000천원 - 온·오프라인 성과공유회 20,000,000원*1회 = 20,000천원 - 성과사례집(온라인용 포함) 제작 10,000,000원*1회 = 10,000천원
	증감사유	
	○ 위드코로나,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공공-기업-시민 참여의 상생가치 확산에 따라 상생네트워크 구축 사업 신규 편성	

2) 주민자치회 관련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내 주요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해결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과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지원과 자치회관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자치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범위)

-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
 2.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
 3.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회관 시설 및 환경 개선
 2. 자치회관에 대한 종합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
 3. 자치회관 도농교류 활성화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2017년 11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1년 22개 자치구 236개동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음.

〈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현황 〉

- '17.11월 : 최초 4개구 26개동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시작
 - 성동구(8개동), 성북구(2개동), 도봉구(6개동), 금천구(10개동)
- '18.1월 ~ '20.12월 : 18개구 210개동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확대
 - (전동시행) 10개구 : 성동, 성북, 도봉, 금천, 동대문, 노원, 은평, 서대문, 강서, 동작
 - (확대중) 12개구 : 종로, 마포, 양천, 관악, 강동, 용산, 광진, 중랑, 강북, 구로, 영등포, 송파
- '21.4월 기준 : 총 22개구 236개동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중
 - (미시행) 중구, 서초, 강남 → 주민자치회 구 조례 제정 후 시행 예정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 동단위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50인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
 - 위원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2명, 간사 1명 등 선출
 - ※ 자치구 조례별 규정내용 상이함

- 다만, 동 사업 관련 예산은 행정국과 시민협력국 예산으로 구분되어 지원하고 있는바, 행정국 소관 예산 사업은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으며, 시민협력국 소관 예산 사업은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과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이 있음.

〈 부서별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내용 비교(2021년 기준) 〉

	행정국	시민협력국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근거	지방분권법, 시범사업 추진계획(2017.2.)	마을공동체기본계획(2018.3.)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사업 시기	2017년~현재	2019년~현재	
사업 범위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제도적 구축 지원 (인건비, 운영비 등)	자치사업 발굴 및 실행 지원	
추진 방식	-	주민세 개인균등분(주민자치회 시행동) 규모내에서 의제선정 및 실행사업비 지원	사업공모
사업 유형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인건비, 운영비 등	행사성, 프로그램성 등 일회성 사업 중심	
비고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위·수탁 운영	

※ 출처 : 시민협력국 제출자료 재구성

- 2022년도 시민협력국 소관 주민자치회 사업 관련 예산은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에 통폐합되어 총 50억 3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지난 2021년 주민자치회 사업 관련 예산으로 총 91억 4천 6백만원 편성과 대비하여 45.3%감액된 41억 4천 3백만원이 감액된바, 주민자치회 활동은 주민의 자치력 향상을 위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인 만큼 제도의 목적에 맞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2회계연도 시민협력국 소관 주민자치회 사업 관련 예산〉

(단위:천원)

세부사업	2021년	2022예산(안)	증감률
소 계	9,146,415	5,003,229	△45.3%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2022년 예산은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276,600천원 포함)	5,368,796	5,003,229	△6.8%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3,777,619	0	△100.0%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은 주민세 징수분을 지역으로 환원하여 주민자치 활동 지원을 통해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53억원 6천 9백만원) 대비 6.8%(3억 6천 6백만원) 감액한 50억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예산편성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5,368,796	(x-) 5,368,796	(x-) 5,003,229	(x-) △365,567	(x-) △6.8
사무관리비	(x-) 7,000	(x-) 7,000	(x-) 7,000	(x-) 0	(x-) 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5,095,308	(x-) 5,095,308	(x-) 4,785,196	(x-) △310,112	(x-) △6.1
자치단체 자본보조	(x-) 266,488	(x-) 266,488	(x-) 211,033	(x-) △55,455	(x-) △20.8

- 동 사업 예산은 주민자치회 지원 대상을 전년도 22개구 136개동에서 2022년 22개구 234개동으로 확대하는 반면, 각 자치회 지원 예산은 자치구의 낮은 실집행률을 이유로 2020년도 실제 집행률 수준으로 감액하여 편성 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자치구별 사업비 예산 비교 〉

(단위:천원)

자치구	2021년 사업비 교부내역			2022년 예산안(가안)		
	계	경상보조금	자본보조	계	경상보조금	자본보조
합계	5,361,796	5,095,308	266,488	4,719,629	4,527,096	192,533
종로구	72,086	72,086	-	5,568	5,568	
용산구	129,058	129,058		66,656	66,656	
성동구	485,438	448,970	36,468	242,954	224,644	18,310
광진구	206,869	192,369	14,500	104,610	104,610	
동대문구	163,900	163,900		276,889	276,889	
종량구	225,225	213,425	11,800	129,533	127,533	2,000
성북구	391,800	385,800	6,000	360,423	331,141	29,282
강북구	190,780	190,780		74,855	74,855	
도봉구	371,348	347,848	23,500	262,576	262,576	
노원구	260,028	257,028	3,000	411,611	386,811	24,800
은평구	248,799	207,199	41,600	375,300	375,300	
서대문구	178,567	178,567		216,274	216,274	
마포구	262,415	249,815	12,600	129,220	129,220	
양천구	240,140	229,020	11,120	234,172	228,376	5,796
강서구	221,627	194,927	26,700	486,002	430,427	55,575
구로구	161,707	159,607	2,100	80,206	80,206	
금천구	432,003	376,403	55,600	229,975	205,975	24,000
영등포구	179,662	179,662		95,705	95,705	

동작구	253,696	253,696		310,855	300,085	10,770
관악구	238,663	222,163	16,500	139,259	117,259	22,000
송파구	217,533	212,533	5,000	119,493	119,493	
강동구	230,452	230,452	-	367,493	367,493	

※ 2022년 자치구별 예산은 현재 가안으로 확정예산이 아니며,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예산 총액 확정 시, 자치구와의 협의 등을 통해 변동될 수 있음

※ 출처 : 시민협력국 제출자료

- 또한, 기존의 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 되었던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 예산이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에 통합되어 편성되었는바,
 - 시민협력국은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의 예산 감액 및 통폐합사유에 대해 각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시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주민자치회 미시행동인 7개구 15개동에 대한 사업실행비만 편성하여 전년 대비 92.7% 감액(35억 1백만원)한 2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의 산출근거 〉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사업 운영 = 1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4,000,000원 = 4,000천원 ○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담당자 교육, 매뉴얼 제작 등 사업 운영 3,000,000원 = 3,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4,000,000원 = 4,000천원 ○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담당자 교육, 매뉴얼 제작 등 사업 운영 3,000,000원 = 3,000천원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2,000,000원 = 2,000천원 - 책자 제작 8,000,000원 = 8,000천원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 동단위계획형 사업 지원 3,496,399,000원 = 3,496,399천원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 5,095,308천원 - 1단계 4개구 46개동 1,559,021,000원 = 1,559,021천원 - 2단계 11개구 55개동 2,258,853,000원 = 2,258,853천원 - 3단계 7개구 35개동 1,277,434,000원 = 1,277,434천원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 4,527,096천원 - 1단계 4개구 61개동 1,285,196,000원 = 1,285,196천원 - 2단계 11개구 138개동 2,541,900,000원 = 2,541,900천원 - 3단계 7개구 35개동 700,000,000원 = 700,000천원 ○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주민자치회 미시행 15개동) = 258,100천원 - 주민자치회 미시행 7개구 15개동 258,100,000원 = 258,100천원
자치단체자 본보조	○ 동단위계획형 사업 지원 271,220,000원 = 271,220천원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 266,488천원 - 1단계 4개구 46개동 121,568,000원 = 121,568천원 - 2단계 11개구 55개동 111,520,000원 = 111,520천원 - 3단계 7개구 35개동 33,400,000원 = 33,400천원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 192,533천원 - 1단계 4개구 61개동 50,059,000원 = 50,059천원 - 2단계 11개구 138개동 113,594,000원 = 113,594천원 - 3단계 7개구 35개동 28,880,000원 = 28,880천원 ○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주민자치회 미시행1개동) = 18,500천원 - 주민자치회 미시행 1개동 18,500,000원 = 18,500천원

※ 출처 : 시민협력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재구성

- 시민협력국은 이미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의제 및 보조금 신청액을 확정된 234개동의 신청예산에서 50%에 해당하는 예산만을 편성하였는 바, 주민들이 서울시 주민자치활동계획에 따라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개발했던 사업들이 자칫 무력화·백지화될 우려와 각 자치구의 부담분에 따라 주민자치회 예산에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여 자치구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 계획 연도별 지원계획(안) 〉

(단위: 개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원동(지원액)	26(10)	80(35)	136(54)	<u>236(89)</u>	316(120)	425(161)

- 세입결산 동별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을 기준으로 사업 규모를 산정하나, 예산 확정안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음.
- ※ 출처: 2021년 주민세(개인균등)징수분 환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 계획(시민협력국 제출)

- 또한,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청원인 외 238명이 제출한 「서울시 주민자치회 예산삭감 반대 및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에 관한 청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활동지원사업 방침(2021.4.6.)에 근거하여 주민총회를 거쳐 2022년의 동단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고하였으나, 서울시의 예산삭감 조치로 인해 주민자치계획 무산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 ‘서울형 주민자치회’사업이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에서 동단위로 정책·사업·예산이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이루는바, 이를 감안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의 적정 편성과 집행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 주민자치회 예산삭감 반대 및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에 관한 청원 〉

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45	접수연월일	2021. 11. 4
청 원 인	주 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29길	
	성 명	서림동 주민자치회장 정춘근 외 238명	
소개의원 (소속위원회)	서윤기(기획경제), 송도호(교통) 유정희(환경수자원), 임만균(도시계획관리)		
건 명	서울시 주민자치회 예산삭감 반대 및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에 관한 청원		
소관위원회	행정자치		

-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년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결과, 현재 22개 구 236개 동에서 구성·운영될 정도로 성장함.

짧은 도입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하면서, 주민자치역량 강화와 더불어 민과 관이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장으로 기능해 왔음.

그러나,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활동지원사업 방침(‘21.4.6.)에 근거하여 주민총회를 거쳐 2022년의 동단위 자치계획을 수립,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고하였으나, 서울시의 전면적이고 일방적인 예산 삭감 조치로 인해 주민자치계획의 무산을 넘어 주민자치 제도와 정책이 전면 후퇴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바, 주민자치회 예산의 편성과 함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청원함.

- 한편, ‘서울형 주민자치회’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에서 3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는 바,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운영성과 평가 및 문제점 도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발전 가능한 예산편성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형 주민자치회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

- 2021.6.7. :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말하다
- 2021.6.25. : 서울형 주민자치회 5년 생활자치의 가능성을 열다
- 2021.9.16. : 서울형 주민자치회, 미래를 말하다

3) 민간위탁금 관련 예산

- 시민협력국 소관 민간위탁기관은 9개 기관으로 전체 ‘민간위탁금’은 전년 (166억 3천만원) 대비 34.4%(57억 1천 8백만원) 감액한 109억 1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2년 예산편성한 시민협력국 소관 민간위탁금 세부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예산	'22년 예산(안)	증감률(%)	비고
총계	16,630	10,912	△34.4%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639	179	△72.0%	
인건비	5명 : 255	2명 : 94		
운영비	53	29		
사업비	331	53		
일반관리비	0	3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521	205	△60.7%	
인건비	6명 : 278	2명 : 92		
운영비	112	80		
사업비	122	29		
일반관리비	9	4		

마포 마을활력소	268	104	△61.2%	
인건비	3명 : 141	1명 : 46		
운영비	54	40		
사업비	68	16		
일반관리비	5	2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4,066	2,810	△30.9%	
인건비	30명 : 1,667	30명 : 1,783		
운영비	369	305		
사업비	2,016	717		
일반관리비	14	5		
서울혁신센터	7,037	5,849	△16.9%	
인건비	77명 : 3,894	69명 : 3,492		
운영비	1,637	1,596		
사업비	664	138		
일반관리비	108	91		
부가가치세	630	532		
낙찰차액	104			
서울시NPO지원센터	2,146	1,146	△46.6%	
인건비	17명 : 904	10명 : 510		11개월반영
운영비	405	353		
사업비	800	261		
일반관리비	37	22		
동남권NPO지원센터	663	231	△65.2%	
인건비	5명 : 260	2명 : 105		
운영비	142	60		
사업비	248	61		
일반관리비	13	5		
서남권NPO지원센터	607	236	△61.1%	
인건비	5명 : 206	2명 : 104		
운영비	211	61		
사업비	161	66		
일반관리비	10	5		
낙찰차액	19			
동북권NPO지원센터	683	152	△77.7%	
인건비	5명 : 298	2명 : 54		5.5개월반영
운영비	158	61		
사업비	214	34		
일반관리비	13	3		

※ 출처 : 시민협력국 제출자료 재구성

- 9개의 민간위탁 기관 중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민간위탁기관의 인건비 관련 예산이 일괄 삭감되어 편성됨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 관련 문제는 없는지, 사업비 및 운영비가 과도하게 삭감됨에 따라 각 기관에서 주민자치 사업과 운영의 비효율로 이어지는 예산편성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① 민주시민교육 추진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 본 사업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전년(18억 4천 7백만원) 대비 90.1%(16억 6천 4백만원) 감액한 1억 8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민주시민교육 추진’ 사업 예산편성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1,847,287	(x-) 1,847,287	(x-) 182,517	(x-) △1,664,770	(x-) △90.1
사무관리비	(x-) 8,200	(x-) 8,200	(x-) 3,450	(x-) △4,750	(x-) △57.9
민간위탁금	(x-) 639,087	(x-) 639,087	(x-) 179,067	(x-) △460,020	(x-) △72.0
자치단체 자본보조	(x-) 1,200,000	(x-) 1,200,000	(x-) 0	(x-) △1,200,000	(x-) △100

- 특히, 생활 속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센터 관련 민간위탁금은 전년(6억 3천 9백만원) 대비 72.0%(4억 6천만원) 감액한 1억 7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 52.5%(9천 4백만원), 사업비 29.6%(5천 3백만원), 운영비 16.2%(2천 9백만원)로 구성되었음.

〈 ‘민주시민교육 추진’ 사업 예산 세부산출 내역 〉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 8,200천원	○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 3,450천원 - 참석수당 150,000원*11명*2회 = 3,300천원 - 회의운영비 75,000원*2회 = 150천원
	증감사유	
	○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횟수 및 참석 인원 조정	
민간위탁금	○ 인건비 254,777천원 = 254,777천원	○ 인건비 94,267,000원 = 94,267천원
	○ 운영비 52,809천원 = 52,809천원	○ 운영비 29,131,000원 = 29,131천원
	○ 사업비 331,501천원 = 331,501천원	○ 사업비 52,400,000원 = 52,400천원 ○ 일반관리비 3,269,000원 = 3,269천원
증감사유		
○ 센터 사업 중 공모, 용역성, 중복성 사업 폐지 및 축소 ○ 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2년 9월로 9개월 분 인건비 및 운영비 반영 ○ 센터 사업 축소로 인력 감축(5명→2명)		
자치단체자본보조	○ 독도전시관, 독도체험관 등 공간조성 지원 1,200,000,000원 = 1,200,000천원	
	증감사유	
○ 독도전시관, 독도체험관 등 공간 조성 완료		

- 생활 속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센터 인건비와 관련하여 기존 5명 기준의 인건비를 2명 정원으로 일괄 삭감하여 편성하였는바, 동 센터의 위탁기간은 2022년 9월 10일까지(위탁기관:(사)징검다리 교육공동체)로 현재 운영중인 기관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정리 해고에 놓이게 하는 것은 아닌지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생활속 민주주의 시민학습지원센터’ 2022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대비표 〉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1 예산		2022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639	639	179	△460	△72.0%
인건비	255	255	94	△161	△63.0%
운영비	53	53	33	△20	△38.6%
사업비	331	331	52	△279	△84.2%
시민 공론 촉진 및 역량강화	102	102	0	△102	100%
시민 교육 실천활동 지원	149	149	12	△137	91.9%
기반조성 및 저변 확대	80	80	40	△40	50.0%

②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마포 마을활력소, 동북권 마을배움터)

- 본 사업은 사·구 소유 공간, 민간건물 등 다양한 공간을 인근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조성하여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 내 경제, 문화, 돌봄 등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88억 1천 2백만원) 대비 67.3%(59억 2천 9백만원) 감액한 28억 8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 예산편성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8,751,183	(x-) 8,812,593	(x-) 2,883,512	(x-) Δ5,929,081	(x-) Δ67.3
사무관리비	(x-) 152,467	(x-) 152,467	(x-) 117,993	(x-) Δ34,474	(x-) Δ22.6
공공운영비	(x-) 208,505	(x-) 208,505	(x-) 218,338	(x-) 9,833	(x-) 4.7
민간위탁금	(x-) 789,689	(x-) 789,689	(x-) 308,925	(x-) Δ480,764	(x-) Δ60.9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175,522	(x-) 175,522	(x-) 230,996	(x-) 55,474	(x-) 31.6
시설비	(x-) 5,186,700	(x-) 5,248,110	(x-) 1,544,149	(x-) Δ3,703,961	(x-) Δ70.6
감리비	(x-) 5,280	(x-) 5,280	(x-) 20,630	(x-) 15,350	(x-) 290.7
시설부대비	(x-) 3,020	(x-) 3,020	(x-) 4,346	(x-) 1,326	(x-) 43.9
자치단체 자본보조	(x-) 2,230,000	(x-) 2,230,000	(x-) 438,135	(x-) Δ1,791,865	(x-) Δ80.4

- 특히, 마포 마을활력소와 동북권 마을배움터 관련 민간위탁금은 전년(7억 9천만원) 대비 60.9%(4억 8천만원) 감액한 3억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이 중 마포 마을활력소는 1억 4백만원으로 2021년도 최종예산 2억 6천 8백만원 대비 61.1% 감액되었으며, 동북권 마을배움터는 2억 8백만원으로 전년 예산인 5억 2천 2백만원 대비 60.7% 감액된 수준임.

〈 ‘마포 마을활력소’ 예산편성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1년 대비 증 감	증감률	
총 계	268,029	104,171	△ 163,858	△ 61.1%	
행정관리	소 계	268,029	104,171	△ 163,858	△ 61.1%
	행정운영경비	200,497	88,191	△ 112,306	△ 56.0%
	사업비	67,532	15,980	△ 51,552	△ 76.3%

〈 ‘동북권 마을배움터’ 예산편성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1년 대비 증 감	증감률	
총 계	521,660	204,754	△ 316,906	△ 60.7%	
행정관리	소 계	521,660	204,754	△ 316,906	△ 60.7%
	행정운영경비	399,637	176,154	△ 223,483	△ 55.9%
	사업비	122,023	28,600	△ 93,423	△ 76.6%

- 마포 마을활력소는 기존 3명 기준의 인건비를 1명 정원으로 일괄 삭감하였는바, 동 센터는 전환마을만들기, 성미산아카데미, 골목정원가꾸기, 커뮤니티카페 운영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동 인건비로 마을활력소 사업이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마포마을활력소 성미산마을회관’ 민간위탁 세부사업별 상세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안)	산출기초(안)
총 계		104	
민간위탁금(마포마을활력소 성미산마을회관)		104	
인건비	46	- 마포마을활력소 인원 1명	
운영비	40		
일반관리비	2	- 인건비운영비사업비 합계의 2%이내	
사업비(소계)		16	
마을이야기	2	- 전환마을만들기 2백만원	
세대어울림	2	- 성미산아카데미: 2백만원	
마을력활성화	12	- 마을신년회 60명: 0.78백만원 - 골목정원가꾸기 50명: 0.58백만원 - 그래도운동해 60명: 1백만원 - 커뮤니티카페운영 재료구입비 5.68백만원 - 커뮤니티카페 기기유지관리비등 3.66백만원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인건비도 기존 6명 기준에서 2명 정원으로 일괄 삭감하였는바, 특히 동 센터는 마을배움특강과 청소년 마을배움 담론 네트워크, 주민발굴 프로젝트, 전환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사업이 있음에도, 총 예산 대비 사업비가 14.1%(2천 9백만원)에 불과하여 사업과 운영의 비효율로 이어지는 예산편성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민간위탁 세부사업별 상세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안)	산출기초(안)
총 계		205	
민간위탁금(동북권역 마을배움터)		205	
인건비		92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인원 총 2명
운영비		80	-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5백만원 - 업무추진비 3백만원 - 시설비 13백만원 - 자산취득비 9백만원
일반관리비		4	- 인건비운영비사업비 합계의 2%이내
사업비(소계)		29	
	마을배움터 아카이빙	7	- 정기웹진 공유 3백만원 - 마을배움특강 4백만원
	동북사구 마을배움의 성장과 연대	12	- 홍보비 1백만원 - 청소년 마을배움 담론 네트워크 5백만원 - 주민발굴 프로젝트 4백만원 - 문화다양성 실천 2백만원
	청소년 마을배움	10	- 전환프로젝트 3백만원 - 숨기확단 2백만원 - 큰 축제 5백만원

③ 서울시 NPO지원센터 관련 예산

- 시민협력국은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과 성장을 지원하고 NPO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사업과 ‘서울시 권역 NPO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사업은 NPO역량강화 지원, 공익활동 기반 조성 및 정책연구, 조사, 홍보를 위한 것으로 전년(21억 5천 5백만원) 대비 40.7%(8억 7천 6백만원) 감액한 12억 7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편성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2,155,349	(x-) 2,155,349	(x-) 1,278,540	(x-) △876,809	(x-) △40.7
사무관리비	(x-) 10,000	(x-) 10,000	(x-) 132,350	(x-) 122,350	(x-) 1,223.5
민간위탁금	(x-) 2,145,349	(x-) 2,145,349	(x-) 1,146,190	(x-) △999,159	(x-) △46.6

- 특히,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의 2022년 편성예산은 11억 4천 6백만원으로 전년 예산인 21억 4천 5백만원 대비 46.6%(9억 9천 9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예산 세부산출 내역 〉

(단위:천원)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운영 등 = 10,000천원 - 회의참석수당 및 운영비 2,500,000원*4회 = 10,000천원	○ 민간위탁 검토비용 = 1,350천원 - 민간위탁 검토수당 및 운영비 150,000원*9명 = 1,350천원 ○ NPO지원 사업 직접수행비 = 131,000천원 - 비영리스타트업 지원 사업 운영 59,000,000원 = 59,000천원 - NPO지원박람회 사업 운영 72,000,000원 = 72,000천원
	증감사유	
	○기존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운영예산을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으로 통합 편성 ○NPO지원박람회, 비영리스타트업지원 사업 서울시 직접 운영으로 변경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여 민간위탁 검토를 위한 수당 및 운영비 반영 -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수당단가 및 인원 조정 반영	
민간위탁금	○ NPO지원센터 운영 2,145,349,000 = 2,145,349천원 <u>- 인건비</u> <u>903,174,000원</u> = 903,174천원 - 운영비 428,520,000원 = 428,520천원 <u>- 사업비</u> <u>777,080,000원</u> = 777,080천원 - 일반관리비 36,575,000원 = 36,575천원	○ NPO지원센터 운영 1,146,190,000원 = 1,146,190천원 <u>- 인건비</u> <u>509,520,000원</u> = 509,520천원 - 운영비 353,112,000원 = 353,112천원 <u>- 사업비</u> <u>261,416,000원</u> = 261,416천원 - 일반관리비 22,142,000원 = 22,142천원
	증감사유	
	○ 공모사업, 연구용역사업 등 센터 기능에 맞지 않는 사업 등 감액 조정 - 인건비 : 사업 종료 및 축소, '22년 공무원 임금상승률 적용 등에 따른 인건비 감액 조정(17명→10명) - 운영비 : 건물관리비 등 고정비용 제외한 인건비, 사업비 축소 규모에 따라 감액 조정 - 사업비 : 공모지원사업, 연구용역 사업의 축소, 기타 중복적 성격 사업 조정 등에 따른 사업비 감액 - 일반관리비 : 순 원가(인건비,운영비,사업비 합)의 1.9% 편성(2% 이내 편성기준)	

- 서울시 NPO지원센터는 공익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NPO 지식포럼 개최, NPO상담소 운영, 활동가역량강화 온라인 학습플랫폼 오픈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관련 사업비는 전년(8억원) 대비 67.3%(5억 3천 9백만원) 감액한 2억 6천 1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동 센터 총 예산에서 22.8%에 불과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시 NPO지원센터’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1 예산		2022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2,145,349	2,145,349	1,146,190	△999,159	△46.6
인 건 비	903,174	903,174	509,520	△393,654	△43.6
운 영 비	405,520	405,520	353,112	△52,408	△12.9
사 업 비	800,080	800,080	261,416	△538,664	△67.3
조직운영 역량강화 컨설팅/ 조직변화지원사업(18년)	80,000	80,000	70,725	△9,275	△11.6
사업설명회	-	-	-	-	-
비영리스타트업 지원	90,000	90,000	-	△90,000	△100.0
대학연계비영리스타 트업육성	-	-	-	-	-
활동가역량강화지원	170,000	170,000	37,144	△132,856	△78.2
활동가역량인재구축사업	-	-	-	-	-
NPO참여예산제	-	-	-	-	-
NPO 국제컨퍼런스	-	-	-	-	-
NPO지원박람회 (파트너페이)	120,000	120,000	-	-	-
NPO상담소	-	-	-	-	-
정책연구 (시민사회정책지원)	70,000	70,000	-	-	-
대외 협력사업	40,000	40,000	20,000	△20,000	△50.0
권역, 자치구 NPO지 원체계 기반조성	30,000	30,000	-	-	-
거점공간 조성	-	-	-	-	-
홍보	65,080	65,080	20,000	△45,080	△69.3
정보아카이브	65,000	65,000	45,547	△19,453	△29.9
공익활동협업공간지원/ 공간나눔지원(18년)	-	-	-	-	-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1 예산		2022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NPO포럼	50,000	50,000	48,000	△2,000	△4.0
공간 및 전시지원	20,000	20,000	20,000	-	-
일반관리비	36,575	36,575	22,142	△14,433	△39.5

- 또한, 동 센터 인건비를 기존 17명 기준에서 10명 정원으로 일괄 삭감한데 대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관련 조사 결과(「서울특별시 NPO 지원센터 민간위탁 예산 및 인력 감축 관련 고충민원 직접조사 결과 보고」를 살펴보면,
 -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관련 일방적 예산 및 직원 감축 요구 관련 문제는 ① 센터의 사무가 조례상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동 센터 관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점수가 85.46점으로 높았으며, 적격자심의 위원회와 시의회 동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행사무가 민간위탁 사무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점, ③ 사업부서도 변동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22년 예산을 전년도 예산과 비슷한 규모로 책정하여 예산담당관에 요구한 점, ④ 동 센터 수탁기관 노동자도 2019년 16명에서 2020년 이후 17명으로 인원이 유지되고 있는 점, ⑤ 해당 인원은 전원 정규직으로 센터 근무를 위해 공개 채용된 인원이라는 점, ⑥ 서울사가 수탁기관에 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⑦ 센터 사무 관련 대규모 변경 또는 조정에 대해 시와 이 건 수탁기간 전에 사전에 아무런 소통이나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 수탁기관과 수탁기관 노동자들의 예측 가능한 범위와 사유를 넘어선 서울시의 일방적인 통보는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 회계 및 인사 노무 운영 매뉴얼」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것으로, 사업부서와 예산 담당관은 이 건 수탁기관과 소통 협의를 통해 예산편성을 재검토 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음.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예산 및 인력 감축 관련」 고충민원 직접조사 결과 보고 〉

고충민원 조사결과			
민원표시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예산 및 인력 감축 관련 문제에 관한 민원 (접수번호: ○○○○○○○○○○○○○○○○○○○)		
신청인	○○○○ ○○		
피신청인	서울시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접수일	2021. 11. 2.

I. 조사개요

1. 조사대상 :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2. 조사기간 : 2021. 11. 2. ~ 11. 19.
3. 조사자 :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4. 중점 조사사항

-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관련 일방적 예산 및 직원 감축 요구 관련 문제

2. 확인사실

가.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현황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 주요기능 : 시민공익활동 촉진, NPO성장 지원, 공익활동 기반조성 등
- 시설현황 : 중구 남대문로9길 39, 1, 2층 (을지로1가, 부림빌딩)(전용 867.4㎡)
 - 1층: 열린 공간(310㎡, 약93평) → 대강단, 전시공간 등
 - 2층: 사무 공간(557㎡, 약169평) → 협업공간, 회의실, 사무실, 교육장 등
- 위탁현황 : ‘사단법인 시민’이 수탁 운영(2016. 재계약 / 2019. 재위탁)
 - 2019년 재위탁(공개모집)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2019. 2.~4.) : NPO지원센터 종합성과평가 점수 **85.46점**(당시 종합성과평가 대상 위탁사무 평균점수 79.59점)
 - 「서울시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의결 : 2019. 6.
 - 수탁기관 공모 : (1차)2019. 7. 19.~8. 29. (재공고)9. 6.~9. 17.
 -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 2019. 9. 24.

- 수탁기관 선정결과 : 사단법인 시민, 협약 체결 완료(2019. 11. 14.)
- 위탁 기간 : 2019. 11. 15. ~ 2022. 11. 14.

○ 2021 예산 : 2,145,349원(민간위탁금)

(중 략)

3. 판단 및 결론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에 의하면, 서울시는 “민간위탁은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탁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조성하여 민간위탁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자치구 등 타 공공기관 및 민간으로까지 확산”, “특히 민간위탁 제도 개선을 통해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 유지·승계를 의무화하여 고용을 안정화하고 노동조건 및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을 수탁기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 수립으로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하면, 서울시는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의 고용유지 및 승계 등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을 검토할 의무가 있고, 수탁기관에 대하여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종합성과평가 시에도, ‘사회적 가치 기여’항목으로서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을 평가하고 있음
 - 한편, ‘열악한 근로조건 및 고용불안 문제, 낮은 위탁 단가에 따른 임금체불 등 민간위탁 노동자의 처우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화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에 의하더라도, “○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을 승계함을 명시”, “○ 위·수탁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 서울시는 센터의 사업 중 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예산을 절반 가까이 감액, 인건비를 17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였는바,
- 이 건 수탁기관으로서는, ① 센터의 사무가 조례상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② 이 건 수탁기관의 센터 관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2019. 2.~4.) 결과 NPO지원센터 종합성과평가 점수 85.46점(당시 종합성과평가 대상 위탁사무 평균점수 79.59점)으로 높았으며 적격자심의위원회와 시의회 동의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행사무가 민간위탁 사무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바 있다는 점, ③ 사업부서

도 당초에는 이 건 수탁기관의 센터 민간위탁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변동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22년 예산을 2021년과 비슷한 규모로 책정하여 예산담당관에 요구하였다는 점, ④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이 21억 원에서 24억 원 정도의 규모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센터 이 건 수탁기관 노동자도 2019년 16명에서 2020년 이후 17명으로 인원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 ⑤ 해당 인원은 전원 정규직으로서 센터 근무를 위하여 공개 채용된 인원이라는 점, ⑥ 서울시가 수탁기관에 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⑦ 센터의 사무 관련 사업 방식 등이 대규모로 변경되거나 조정된다는 것과 관련하여 시와 이 건 수탁기관 간에 사전에 아무런 소통이나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 적어도 민간위탁 협약기간(2019.11.15.~2022.11.14.) 동안의 민간위탁 규모는 최초 민간위탁 공고 시 공고된 2019년 위탁금액인 2,382,835천원 범위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사무와 고용유지의 범위도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신뢰하고 협약을 맺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 그런데 이 건 수탁기관과 수탁기관 노동자들의 위 예측 가능한 범위와 사유를 넘어서서, 서울시가 예산을 1,146,190천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액, 센터 인원을 17명에서 10명으로 감축할 것을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이 건 수탁기관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해당 인원 감축 요구로 인한 대규모 해고 위협을 이 건 수탁기관 노동자들에게 감내하라고 한다면, 이는 서울시 민간위탁의 “지방 정부의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과 기능”, “수탁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조성하여 민간위탁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할 필요”, “서울시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자치구 등 타 공공기관 및 민간으로까지 확산”, “민간위탁 제도 개선을 통해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 유지·승계를 의무화하여 고용을 안정화하고 노동조건 및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이라는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상의 서울시 수탁기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을 벗어나 민간위탁 고용불안의 위협을 수탁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시의회에서 위 예산안이 심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부서와 예산담당관은 서울시의 수탁기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 준수와 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 건 수탁기관과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예산 편성을 재검토하는 등 위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권고)

- 동남권 NPO지원센터, 서남권 NPO지원센터,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서울시 권역 NPO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은 전년(19억 8천 3백만원) 대비 62.1%(12억 3천 1백만원) 감액한 7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서울시 권역 NPO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1,982,657	(x-) 1,982,657	(x-) 750,871	(x-) △1,231,786	(x-) △62.1
사무관리비	(x-) 30,000	(x-) 30,000	(x-) 132,000	(x-) 102,000	(x-) 340
민간위탁금	(x-) 1,952,657	(x-) 1,952,657	(x-) 618,871	(x-) △1,333,786	(x-) △68.3

- 특히, 권역별 NPO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의 2022년 편성예산은 6억 1천 8백만원으로 전년 예산인 19억 5천 3백만원 대비 68.3%(13억 3천 4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 ‘서울시 권역 NPO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예산 세부산출 내역 〉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서남권센터 조성 공간 임차료 등 = 30,000천원	○ 권역 NPO지원센터 임차료 = 129,000천원
	- 임차료, 관리비 등 8,500,000원*3개월 = 25,500천원	- 동남권 NPO지원센터 69,000,000원 = 69,000천원
	- 자문회의 및 부대비용 4,500,000원 = 4,500천원	- 서남권 NPO지원센터 60,000,000원 = 60,000천원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 권역센터 관련 자문회의 및 부대비용 = 3,000천원 - 동북권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검토수당 200,000원*10명 = 2,000천원 - 소모품 구입비 400,000원 = 400천원 - 속기비 600,000원 = 600천원 증감사유 ○ 기존 권역 NPO센터 임차료 과목변경(민간위탁금 → 사무관리비) : 129,000천원 ○ 동북권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만료('22.6.14)에 따른 민간위탁 검토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 반영
민간위탁금	○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 683,241천원 - 인건비 304,900,000원 = 304,900천원 - 운영비 159,134,000원 = 159,134천원 - 사업비 205,810,000원 = 205,810천원 - 일반관리비 13,397,000원 = 13,397천원	○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 152,319천원 - 인건비 54,364,000원 = 54,364천원 - 운영비 60,969,000원 = 60,969천원 - 사업비 34,000,000원 = 34,000천원 - 일반관리비 2,986,000원 = 2,986천원
	○ 동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 662,416천원 - 인건비 252,250,000원 = 252,250천원 - 운영비 144,707,000원 = 144,707천원 - 사업비 252,470,000원 = 252,470천원 - 일반관리비 12,989,000원 = 12,989천원	○ 동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 230,698천원 - 인건비 105,383,000원 = 105,383천원 - 운영비 59,392,000원 = 59,392천원 - 사업비 61,400,000원 = 61,400천원 - 일반관리비 4,523,000원 = 4,523천원
	○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 607,000천원 - 인건비 250,000,000원 = 250,000천원	○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 235,854천원 - 인건비 104,375,000원 = 104,375천원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 운영비 145,235,000원 = 145,235천원	- 운영비 60,639,000원 = 60,639천원
	- 사업비 200,000,000원 = 200,000천원	- 사업비 66,216,000원 = 66,216천원
	- 일반관리비 11,765,000원 = 11,765천원	- 일반관리비 4,624,000원 = 4,624천원
	증감사유	
	<p>○ 공모사업, 연구용역사업 등 센터기능에 맞지않는 사업 등 감액 조정</p> <p>- 인건비 : 동북권 NPO지원센터 계약 만료 및 권역별 NPO지원센터 사업 축소에 따라 인건비 감액 (센터별 5명 → 2명)</p> <p>- 운영비 : 동북권 NPO지원센터 계약 만료 및 권역별 NPO지원센터 인건비, 사업비 축소에 따라 운영비 감액</p> <p>- 사업비 : 공모사업, 연구용역사업 삭감 및 기타 중복사업으로 통합추진 가능한 사업비 감액 조정</p> <p>- 일반관리비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합계 2% 이내이므로 감액 조정</p>	

- 동남권 NPO지원센터, 서남권 NPO지원센터,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금은 사업비와 운영비 감액뿐만 아니라, 센터별로 기존 5명 기준의 인건비를 2명 정원으로 일괄 삭감하여 편성하였는바,
-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직접 조사 결과와 같이 센터와의 협약 위반에 대한 논의 및 협의가 없었던 점, 적격자 심의위원회와 시의회 동의 등 적법 절차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인 점 등에 따라 동 센터들의 민간위탁금 일괄 삭감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적정 예산 집행을 위한 세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④ 서울혁신파크 운영 (서울혁신센터)

- 본 사업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사회혁신 실험으로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으로 전년(70억 6천 7백만원) 대비 16.8%(11억 9천만원) 감액한 58억 7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서울혁신파크 운영’ 사업 예산편성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7,066,795	(x-) 7,066,795	(x-) 5,876,129	(x-) Δ1,190,666	(x-) Δ16.8
사무관리비	(x-) 10,000	(x-) 10,000	(x-) 7,000	(x-) Δ3,000	(x-) Δ3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20,000	(x-) 20,000	(x-) 20,000	(x-) 0	(x-) 0
민간위탁금	(x-) 7,036,795	(x-) 7,036,795	(x-) 5,849,129	(x-) Δ1,187,666	(x-) Δ16.9

- 특히, 서울혁신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전년(70억 3천 6백만원) 대비 16.9%(11억 8천 7백만원) 감액한 58억 4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 59.7%(34억 9천 2백만원), 운영비 27.3%(15억 9천 6백만원), 사업비 2.4%(1억 3천 8백만원)로 구성되었음.

〈 ‘서울혁신파크 운영’ 사업 예산 세부산출 내역 〉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서울혁신파크 운영 및 자문 1,000,000*10회 = 10,000천원	○ 서울혁신파크 운영 및 자문 1,000,000원*7회 = 7,000천원
	증감사유	
	서울혁신파크 운영에 따른 법률, 노무 등 자문 횟수 감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서울혁신센터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0,000천원	○ 서울혁신센터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0,000천원
	증감사유	
민간위탁금	○ 서울혁신센터 인건비 = 1,447,443천원	○ 서울혁신센터 사무직 인건비 = 1,066,000천원
	○ 서울혁신센터 운영비 = 337,824천원	○ 서울혁신센터 사무 운영비 = 300,000천원
	○ 서울혁신센터 사업비 = 1,377,600천원	○ 서울혁신센터 사업비 = 138,391천원
	- 입주단체 유치 및 협력사업 지원 = 93,000천원	- 입주단체 지원 및 모집 = 9,808천원
	- 파크 전환모델 개발 및 운영 = 679,600천원	- 공간 활성화 = 94,583천원
- 공간 활성화 = 260,000천원	- 사회혁신연수시설 운영 = 34,000천원	
- 홍보 및 대외협력 = 115,000천원	○ 서울혁신센터 시설관리직 인건비 = 2,425,546천원	
- 사회혁신연수시설 운영 = 230,000천원	○ 서울혁신센터 시설관리 운영비 = 1,296,000천원	
○ 서울혁신센터 시설관리비 = 3,873,928천원	○ 일반관리비 = 91,453천원	
- 시설관리 인건비 = 2,391,782천원	○ 부가가치세 = 531,739천원	
- 시설관리 운영 = 1,482,146천원		
증감사유		
○ 서울혁신센터 사업 축소에 따른 사무직 26명→18명		

- 시민협력국은 서울혁신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6억 6천 3백만원) 대비 79.2%(5억 2천 5백만원) 감액한 1억 3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동 센터가 사업비 부족으로 위탁사무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인건비의 경우에도 기존 26명 정원에서 18명 기준으로 일괄 삭감하였는 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운영중인 기관(위탁기관: (주)이퓨앤피트너스, (사)미래도시환경연구원 컨소시엄)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정리 해고에 놓이게 하는 것은 아닌지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혁신센터’ 예산 세부산출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1년대비 증 감	증감률
민 간 위 탁 금	7,036,795	5,849,129	△ 1,187,666	△ 16.9%
소 계 (계 약 심 사)	6,933,045	5,849,129	△ 1,083,915	△ 15.6%
인 건 비	3,894,009	3,491,546	△ 402,463	△ 10.3%
운 영 비	1,636,698	1,596,000	△ 40,698	△ 2.5%
사 업 비	663,660	138,391	△ 525,268	△ 79.2%
일 반 관 리 비	108,401	91,453	△ 16,948	△ 15.6%
부 가 가 치 세	630,277	531,739	△ 98,538	△ 15.6%
낙 찰 차 액	103,751	-		

- 한편, 서울혁신센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서울혁신센터 2급 직원의 초과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기준과 절차 준수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동 센터는 구체적인 산출기초와 사업계획 없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 본 사업은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및 자치구 중간지원기관으로 마을활동가 등에 대한 교육, 상담 컨설팅 지원과 정책개발 및 연구를 위한 것으로 전년(40억 6천 6백만원) 대비 30.9%(12억 6천만원) 감액한 28억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편성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4,066,896	(x-) 4,066,896	(x-) 2,810,000	(x-) △1,256,896	(x-) △30.9
민간위탁금	(x-) 4,066,896	(x-) 4,066,896	(x-) 2,810,000	(x-) △1,256,896	(x-) △30.9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총 예산 중 운영비 10.9%(3억 5백만원), 사업비 25.5%(7억 1천 7백만원), 인건비 63.5%(17억 8천 3백만원)를 차지하는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전년도 예산심사 등에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조치하도록 하였으나, 2022년 예산편성안에서도 세부 예산 비율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없이 관행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민협력국의 방만한 예산편성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예산 세부산출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1년대비 증 감	증감률	
총 계	4,066,896	2,810,000	△ 1,256,896	△ 30.9%	
행정 관리	소 계	4,066,896	2,810,000	△ 1,256,896	△ 30.9%
	인 건 비	1,667,294	1,783,000	115,706	6.9%
	운 영 비	368,682	305,000	△ 63,682	△ 17.3%
	사 업 비	2,016,600	717,000	△ 1,299,600	△ 64.4%

- 또한, 기존 41명 정원에서 30명 기준으로 예산을 일괄 삭감하였는바(사업비 내 인건비 감액), 지난 11월 12일 위탁 운영기관이 바뀌어 새롭게 수탁받은 기관과 고용승계 대상인 기존 직원들 간 근로계약에 어려움은 없는지 등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 세부산출 내역 〉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민간위탁금	○ 인건비 1,667,294,000원 = 1,667,294천원	○ 인건비 1,783,000,000원 = 1,783,000천원	
	○ 운영비 368,682,000원 = 368,682천원	○ 운영비 305,000,000원 = 305,000천원	
	○ 사업비 = 2,016,600천원	○ 사업비 717,000,000 = 717,000천원	
	- 마을자치정책연구 및 홍보전파 301,400,000원 = 301,400천원	- 홍보 및 성과 확산 90,000,000원 = 90,000천원	
	- 마을활동가 교육 및 지원체계 구축 151,000,000원 = 151,000천원	- 연구 및 평가 개발 102,000,000원 = 102,000천원	
	-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지원 860,800,000원 = 860,800천원	- 교육훈련 131,000,000원 = 131,000천원	
	- 서울형커뮤니티 활성화 703,400,000원 = 703,400천원	- 자치구 교류 협력 394,000,000원 = 394,000천원	
	○ 일반관리비 14,320,000원 = 14,320천원	○ 일반관리비 5,000,000원 = 5,000천원	
	증감사유		
	○ 인건비(증 115,706천원) - 정원 30명에 대한 인건비 ○ 운영비(감 63,682천원) - 사업규모 및 인원 감소를 반영하여 일반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감액 조정 ○ 사업비(감1,299,600천원) - 시 및 자치구 중간지원조직과 유사, 중복 사업 조정 및 이관 - 일부 사업 종료 및 사업비 내 인건비 감액		

- 한편,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동 센터에서 추진한 교육사업과 연구용역 등이 수탁기관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위탁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 것과 관련하여 민간위탁금으로 민간보조사업 성격의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되므로 이와 관련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협력국의 보다 적극적인 민간위탁기관의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

<p>05. 민간위탁금</p> <p>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p> <p>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p> <p>- 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p> <p>※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p>
--

☞ 민간위탁금으로 민간보조사업이나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보조금 심의,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등 각종 절차를 우회하는 위법한 예산편성·집행에 해당함.

4) 시비 지원 종료 및 감액 사업

- 시민협력국은 시민참여 확대와 협치를 통한 시민참여 기반 조성을 전략 목표로 수립하고 있는바, 관련 사업이 주민자치 및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비로 자치구 사업을 지원함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등의 성격을 가진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시민협력국 소관 2022년 예산편성안에는 자치구 주도성 제고를 위해 시비 지원을 종료 및 감액하고, 자치구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이 다수 있는바, 이는 2022년 서울시 전체 예산편성안에 반영되고 있는 추세임.
- 2022년도 시민협력국 소관 예산안에서 자치구 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 또는 종료한 사업으로 ‘서울시민 행복증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공유서울 확산’,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지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사업이 있고, 시비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을 통폐합한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이 있음.

〈 2022년도 시민협력국 소관 예산 사업 중 ‘시비 지원 종료’ 관련 사업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1년도	2022년도	증감		감액사유
				증 감	비율(%)	
1	서울시민 행복증진	464,000	119,000	△345,000	△74.4	용역 완료에 따른 연구 용역비 감액,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중단(서울시민 행복증진을 위해 시 직접 사업 예산 편성)
2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8,751,183	2,883,512	△5,867,671	△67.1	공사 공정률에 따른 자본보조금 조정 반영 및 코로나 19 장기화 감안, 사업 예산일부조정
3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8,050,000	1,220,000	△6,830,000	△84.8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자치구별 자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전액 감축
미편성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	3,777,619	-	△3,777,619	△100.0	시비 지원 중단하고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으로 통폐합
4	공유서울 확산	1,004,500	735,700	△268,800	△26.8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간/자치구 지원규모 축소
5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지원	22,645,500	12,375,400	△10,270,100	△45.4	‘협치기반구축 사업(협치체계 운영경비)’은 자치구 주도성 제고를 위해 시비 지원 종료, ‘분야별 협치 사업’예산은 전년도 집행률을 고려하여 80%수준으로 조정 감액

〈 서울시민 행복증진' 사업 예산 세부산출 내역 〉

(단위:천원)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시민행복 사업 지원 200,000,000원 = 200,000천원	
	증감사유	
	○ '21년 실태조사 완료에 따른 후속사업(행복증진 전략사업) 추진으로, 자치구 행복 관련 공모사업은 예산 미편성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예산 세부산출 내역 〉

(단위:천원)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 8,020,000천원 - 자치구 마을중간지원조직(위탁형) 346,087,000원*23개구 = 7,960,000천원 - 자치구 마을중간지원조직(직영) 60,000,000원*1개구 = 60,000천원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 1,200,000천원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비 50,000,000원*24개구 = 1,200,000천원
	증감사유	
	○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운영비성 경비(인건비,운영비, 4,830백만원)감액 ○ 전 자치구 사업비 지원액을 직영형(50백만원) 수준으로 조정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 예산 세부산출 내역 〉

(단위:천원)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마을활력소 사업비 지원 4,000,000원*26개소 = 104,000천원	○ 마을활력소 사업비 지원 4,118,000원*20개소 = 82,360천원
	○ 거점형 마을활력소 운영비 지원 40,480,000원*1개소*0.5년 = 20,240천원	○ 거점형 마을활력소 운영비 지원 84,334,000원 = 84,334천원
	○ 자치구 마을공동체 공감워크숍 운영 지원 39,150,000원	○ 자치구 마을공동체 공감워크숍 운영 지원 5,000,000원*10개소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 39,150천원 ○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공공요금 12,132,000원 = 12,132천원	= 50,000천원 ○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공공요금 12,302,000원 = 12,302천원 ○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안전점검비 2,000,000원 = 2,000천원
	증감사유	
	○ 마을활력소 사업비 지원(△21,640천원) : 사업비 지원 대상 마을활력소 개수 조정 반영(34개소→20개소) ○ 거점형 마을활력소 운영비 지원(증64,094천원) : 0.5개소→3개소 - 2022년 신규 운영 예정 거점형 마을활력소 사업비 : 송파, 도봉, 중랑 ○ 자치구 마을공동체 공감워크숍 운영 지원(증10,850천원) :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반영(10개소)	
자치단체자본보조	○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자치구 지원 = 1,200,000천원 - 구로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비(2차) 200,000,000원*1개소 = 200,000천원 -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비(2차) 1,000,000,000원*1개소 = 1,000,000천원 ○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조성 자치구 지원 = 1,010,000천원 - 성북구 정릉동 마을활력소 조성 250,000,000원 = 250,000천원 - 도봉구 초록밭 마을활력소 조성 100,000,000원 = 100,000천원 - 중랑구 사가정역 어울림마당 마을활력소 조성 660,000,000원 = 660,000천원 ○ 천연옹달샘 보수공사 및 안전점검비 지원 20,000,000원*1개소 = 20,000천원	○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자치구 지원 = 425,135천원 - 구로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비(3차) 425,135,000원*1개소 = 425,135천원 ○ 천연옹달샘 보수공사 및 안전점검비 지원 13,000,000원*1개소 = 13,000천원
	증감사유	
	○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자치구 지원(감774,865천원) - 구로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비(3차) : '22년 공정률(50%)에 따른 필요 공사비에서 기편성액(1,2차교부) 제외하여 조정반영(조성비 3차 교부) ○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조성 자치구 지원(△1,010,000천원) : 조성 지원 중단 ○ 천연옹달샘 보수공사 및 안전점검비 지원(△7,000천원) : 2020년 실적 수준 유지	

〈 커뮤니티 공간 조성 현황(2021.11.19.기준) 〉

□ 총 61개소: 운영중 45개소, 조성중 16개소

연번	추진연도	자치구	행정동	마을활력소명	조성진행상황	개소시기	조성예산 (사비, 백만원)	면적 (㎡)	비고
1	2015	성동구	금호1가동	금호1가동	운영중	2016.01.	290	220	찾동
2	2015	성북구	동선동	동동마당	운영중	2016.01.	220	316	찾동
3	2015	도봉구	방학3동	은행나루	운영중	2016.02.	300	306	찾동
4	2015	서대문구	천연동	천연옹달샘	운영중	2017.03.	320	165	
5	2015	금천구	독산4동	독산4동	운영중	2015.12.	250	229	찾동
6	2015	관악구	삼성동	행복나무	운영중	2016.09.	396	318.7	
7	2016	성동구	마장동	함께보고	운영중	2017.05.	272	243	찾동
8	2016	성북구	길음1동	성북길나랑 학교	운영중	2018.02.	103	210	
9	2016	도봉구	방학1동	학동지	운영중	2017.07.	272	378	찾동
10	2016	노원구	상계1동	수락행복발전소	운영중	2018.05.	700	360	
11	2016	마포구	성산1동	성미산마을회관	운영중	2018.07.	2,772	250.78	
12	2016	양천구	목2동	용왕산숲속	운영중	2017.06.	150	496.8	
13	2016	구로구	천왕동	천왕역버들	운영중	2017.05.	790	900	
14	2016	금천구	독산1동	맹글맹글	운영중	2017.01.	256	355	찾동
15	2016	금천구	시흥4동	새재미	운영중	2017.03.	250	158	
16	2016	영등포구	대림2동	대림2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중	2017.08.	150	1,002.81	
17	2016	강동구	성내2동	성내어울터	운영중	2018.10.	1,500	538.73	
18	2017	성동구	사근동	사근동	운영중	2019.02.	430	178.12	
19	2017	동대문구	회기동	회기한지봉	운영중	2018.12.	165	66	
20	2017	동대문구	휘경1동	휘경아뜰리에	운영중	2018.12.	435	197.73	
21	2017	성북구	종암동	문화공간 이육사	운영중	2019.12.	2,400	261.4	
22	2017	은평구	갈현1동	고리마루	운영중	2018.06.	220	39.59	찾동
23	2017	은평구	역촌동	토정골사랑방	운영중	2019.01.	400	123.44	
24	2017	은평구	진관동	한옥마을회관	운영중	2019.12.	180	249.16	
25	2017	서대문구	북가좌1동	나비울	운영중	2018.06.	220	99.42	찾동
26	2017	구로구	가리봉동	다붓다붓	운영중	2018.11.	420	189.43	
27	2017	금천구	시흥5동	어울샘	운영중	2018.06.	2,000	937.21	
28	2017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목화	운영중	2018.07.	235	372	찾동
29	2017	동작구	대방동	대방누리마루	운영중	2018.06.	320	224	찾동
30	2017	동작구	신대방2동	보라매동지	운영중	2018.12.	603	200.43	
31	2018	광진구	중곡4동	고랑울림	운영중	2019.07.	300	456.93	찾동
32	2018	중랑구	상봉1동	마중	운영중	2018.11.	135	93	
33	2018	강북구	번3동	어울향기	운영중	2019.12.	300	220	찾동
34	2018	도봉구	방학1동	산돌	운영중	2021.01.	1,900	265.18	

연번	추진연도	자치구	행정동	마을활력소명	조성진행상황	개소시기	조성예산 (사비, 백만원)	면적 (㎡)	비고
35	2018	도봉구	창5동	창오랑	운영중	2018.12.	200	456.4	
36	2018	도봉구	창2동	창이마을꿈터	운영중	2021.01.	500	126	
37	2018	구로구	가리봉동	모아래	운영중	2020.11.	1,500	264.46	
38	2018	동작구	사당2동	사이좋은	운영중	2020.05.	320	45.26	
39	2018	송파구	거여동	송파구 거점형	조성중	2022예정	2,693	984.17	거점형
40	2018	강동구	명일2동	강일	운영중	2019.09.	50	112.44	
41	2018	강동구	천호1동	천호동 거점형	운영중	2020.10.	2,325	628.31	거점형
42	2019	중 구	다산동	다산마루	운영중	2020.10.	200	140.24	찾동
43	2019	중랑구	망우동	중랑구 거점형	조성중	2022예정	2,693	842	거점형
44	2019	도봉구	쌍문2동	도봉구 거점형	조성중	2022예정	1,700	500	거점형
45	2019	노원구	중계4동	중계온마을센터	조성중	2021.12..예정	2,690	1,141	거점형
46	2020	광진구	구의2동	(미정)	조성중	2022예정	1,727	159.97	모두의 공간
47	2020	중랑구	면목3,8동	어울림마당	조성중	2023예정	1,649	609.1	
48	2020	중랑구	면목5동	겸재 마중	운영중	2021.09.	110	66	
49	2020	성북구	길음1동	(미정)	조성중	2021.12예정	168	140.25	모두의 공간
50	2020	성북구	종암동	성북구 거점형	조성중	2023예정	1,964	850	거점형
51	2020	도봉구	도봉동	초록뜰	조성중	2022예정	439	100.08	
52	2020	노원구	상계3,4동	도암어울마루	운영중	2021.11.12.	289	134.98	
53	2020	강서구	방화동	(미정)	조성중	2022예정	310	-	모두의 공간
54	2020	구로구	개봉동	구로구 거점형	조성중	2023예정	2,136	700	거점형
55	2020	금천구	시흥2동	늘솔나루	운영중	2021.05.	189	161.69	
56	2020	동작구	사당3동	사당3동	조성중	2022예정	800	-	
57	2020	동작구	대방동	꽃담소	운영중	2021.11.01.	193	55	
58	2020	강남구	대치4동	대치동	조성중	2022예정	200	127.91	
59	2021	성북구	정릉동	성북구 정릉	조성중	2022예정	261	69.95	
60	2021	금천구	독산2동	(미정)	조성중	2022예정	2,845	283.91	모두의 공간
61	2021	서초구	양재1동	(미정)	조성중	2022예정	4150	115.01	모두의 공간
배움터	2015	강북구	우이동	동북권역마을배움터	운영중	민간위탁 2018.1.9.~ 2021.1.8.(3년) 2021.1.9.~ 2023.1.8.(2년)	2,227 (조성비)	357.51 (2개동)	

※ 출처 : 시민협력국 제출자료

〈 ‘공유서울 확산’ 사업 예산 세부산출 내역 〉

(단위:천원)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공유촉진 사업 지원 20,000,000원*10개 자치구 = 200,000천원	○ 자치구 공유촉진 사업 지원 15,000,000원*10개 자치구 = 150,00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행률 저조를 고려, <u>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의 지원규모 축소</u>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지원’ 사업 예산 세부산출 내역 〉

(단위:천원)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역사회 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17,535,905,000원 = 17,535,905천원	○ 지역사회 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8,951,000,000원 = 8,951,000천원
	○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905,000,000원 = 905,000천원	
	증감사유	
	○ 전년 대비 (△10,130,000천원) 감액 사유 - 전년도 자치구별 평균 지원액 1,000,000천원 중, ‘협치기반구축 사업’ 예산은 협치체계 운영경비로서 자치구 주도성 제고를 위해 시비 지원 종료하고, 나머지 ‘분야별 협치 사업’ 예산은 전년도 자치구 실적행률(‘20년,73.7%)을 고려하여 ‘22년에 80% 수준으로 조정 ○ 자치단체 보조금 총액(12,320,000천원)을 예산 성질별(자본보조/경상보조)로 구분함	

- 다양한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 및 지원으로 일상의 주민자치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협력국에서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며 자치구와 협의 또는 지원을 통해 사업 정책과 예산을 지속해오다가, 자치구와 분담 비율 및 사업내용에 대해 적절한 논의와 협의도 없이 시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 통보는 자의적인 예산 편성으로 자치구에 부담을 주고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행정행태라고 할 것인바,

- 명확한 산출기초 또는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을 전년대비 대폭 삭감한 동 예산의 조정이 적정한 규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시민협력국 소관 민간위탁 기관 현황 〉

연번	사무명/ 시설명 (부서)	위 치 (주 소)	수탁기관	수탁 법인 대표	직원 수	위탁기간 (시작일 ~종료일)	위탁업무
1	생활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시민참여과)	용산구 백범로99길 40, 101동 지하1층	(사)정검다리 교육공동체	곽노현	5	'19.9.11.~ '22.9.10.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활성화,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사업 운영
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지역공동체과)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 8동 3층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지현	29	'21.11.21.~ '22.12.31.	주민주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체계적지원 (마을생태계 기반 조성, 활동가 역량강화, 사례 확산 등)
3	마포 마을활력소 (지역공동체과)	마포구 성미산로 3길2	성미산 청소년 교육활동 연구회	이종훈	3	'21.2.14.~ '23.2.13.	마포 마을활력소 운영에 관한 사무
4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지역공동체과)	강북구 삼양로 173길 31-6	청소년 문화공동체 품	심한기	6	'21.1.9.~ '23.1.8.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운영에 관한 사무
5	서울혁신센터 (사회협력과)	은평구 통일로 684	(주)이퓨앤피트너스, (사)미래도시환경연 구원 컨소시엄	최시원, 강문석, 최재정	81	'21.1.1.~ '23.12.31.	서울혁신파크 효율적 관리·운영
6	서울시NPO 지원센터 (갈등관리협치과)	중구 남대문로9길 39, 1,2층 (부림빌딩)	사단법인 시민	양혁승	17	'19.11.15.~ '22.11.14.	공익활동 기반조성 시민사회 성장지원, 역량강화 등
7	서울시동북권 NPO지원센터 (갈등관리협치과)	도봉구 마들로13길 84, 2층 (창동아우르네)	사단법인 강북풀뿌리 활동가포럼	김성훈	5	'20.6.15. ~ '22.6.14.	노원·도봉·강북· 성북·중랑 권역 민간단체 활동 지원
8	서울시동남권 NPO지원센터 (갈등관리협치과)	송파구 중대로 215, 3층(가락동)	사단법인 커뮤니티 허브공감	이의영	5	'20.3.5. ~ '23.3.4.	서초·강남·송파· 강동 권역 민간단체 활동 지원
9	서울시서남권 NPO지원센터 (갈등관리협치과)	영등포구 당산로28길 4 (당산동)	사단법인 구로공익단체 협의회	이동수	5	'21.3.1. ~ '24.2.28.	강서·양천·구로· 금천·영등포·동작· 관악 권역 공익단체 활동 지원

※ 출처 : 시민협력국 제출 자료

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관련

-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합의제행정기관 근거를 두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어 오다, 2021.6.1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 이후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1년 7월 24일까지의 존속기한 만료로 종료되었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제128조(설치) 법 제116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및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29조(위원장)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0조(소관사무)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시민민주주의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민관협치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부칙 < 제7270호, 2019. 7. 18.>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의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제128조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7월 24일 까지로 한다.

- 시민협력국은 전년까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업 예산을 ‘시민 참여 활성화 추진’사업에 편성하여 운영해오다가, 동 위원회 존속 기간 만료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에는 미편성하였음.

〈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사업 예산 세부산출 내역 〉

(단위:천원)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 = 29,492천원 - 보수 7,373,000원*4명 = 29,492천원	○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 = 37,090천원 - 보수 7,418,000원*5명 = 37,090천원
	증감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수 증가(4개→5개) 및 임금인상률 반영	
사무관리비	○ <u>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u> = 61,600천원 - 참석수당(정기회의+임시의회) 200,000원*11명*12회 = 26,400천원 - 참석수당(참여공론분과) 200,000원*6명*8회 = 9,600천원 - 참석수당(분과협의회 회의) 200,000원*4명*12회 = 9,600천원 - 실무 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200,000원*10명*2회 = 4,000천원 - 회의 자료 인쇄비, 속기료 등 400,000원*30회 = 12,000천원	○ 주민참여연구회 등 운영 = 25,600천원 - 참석수당(주민참여연구회) 200,000원*13명*3회 = 7,800천원 - 참석수당(각종 자문회의) 200,000원*10명*3회 = 6,000천원 - 회의자료 인쇄비, 속기료 등 300,000원*6회 = 1,800천원 - 시민참여 활성화 관련 토론회 10,000,000원*1회 = 10,000천원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워크숍 = 5,000천원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 = 17,460천원 - 참석수당 50,000원*(70명*1회+20명*10회) = 13,500천원 - 속기료 120분*3,000원*11회 = 3,960천원
	○ 시민회의 구성 및 운영 = 200,200천원 - 시민위원 공개모집 및 홍보 = 45,000천원 - 시민위원 오리엔테이션 = 35,000천원 - 운영기구 회의 운영 참석수당 150,000원*10명*5회 = 7,500천원 - 주제별 회의(온오프라인 동시)운영 = 80,000천원 ▷ 회의운영비 5,000,000원*5회(토론의제별) = 25,000천원	○ 시민참여 활성화 홍보 = 180,000천원 - 시민참여 강화 홍보비 100,000,000원 = 100,000천원 - 시민참여 활성화 홍보비 80,000,000원 = 80,000천원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실리테이터 운영비(온오프라인) 200,000원*20명*5회(토론의제별) = 20,000천원 ▷ 회의촬영 및 유튜브 생중계 7,000,000원*5회 = 35,000천원 - 온라인 시민회의 운영 = 32,700천원 ▷ 사회자, 전문가 패널 수당 500,000원*3회*5인 = 7,500천원 ▷ 회의 진행 및 촬영, 유튜브 생중계 8,000,000원*3회 = 24,000천원 ▷ 퍼실리테이터 운영(유튜브 댓글) 200,000원*2인*3회 = 1,200천원 ○ 숙의예산시민회 운영 = 20,482천원 - 참석수당 50,000원*25명*11회 = 13,750천원 - 속기료 120분*3,400원*11회*1.5분과 = 6,732천원 ○ 시민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 50,000천원 	
	증감사유	
	○ 각종 회의 개최 횟수 조정 및 서울시민회의를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과 통합, 연계 운영	
행사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회의 시민총회(민주주의 주간) 개최 = 275,000천원 - 행사 무대 등 행사장 구성 = 90,000천원 - 온오프라인 공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 50,000천원 - 온오프라인 공론 프로그램 영상중계 시스템 및 채널 운영비 = 40,000천원 - 매체광고, 포스터 제작 등 홍보비 = 30,000천원 - 부대행사 운영비 = 25,000천원 - 일반 운영비 = 30,000천원 - 백서 제작비 등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 10,000천원	
	증감사유	
	○ 서울시민회의를 시민제안 및 발굴 사업과 통합, 연계 운영	
국외업무여비	○ 국외업무여비 = 30,000천원 - 시민참여 분야 국제교류 및 우수사례 발굴·공유 = 30,000천원	○ 국외업무여비 = 10,000천원 - 시민참여 분야 국제교류 및 우수사례 발굴·공유 = 10,000천원
	증감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업무여비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시책업무추진비 = 31,500천원 - 민주주의위원회 및 시민회의 운영 = 31,500천원	○ 시책업무추진비 31,500,000 = 31,500천원 -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운영 31,500,000원 = 31,500천원
	증감사유	
특정업무경비	○ 특정업무경비 50,000원*80명*12개월 = 48,000천원	○ 특정업무경비 50,000원*100명*12개월 = 60,000천원
	증감사유	
	○ 정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증가(80명→100명)	

- 한편, 서울시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서울혁신기획관과 함께 시민협력국으로 개편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나, 시민협력국의 관련 조치가 없어 동 조례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강행규정이 그대로 남아있어 동 조례는 형해화(形骸化)¹⁾ 되었음.

1) 내용은 없이 뼈대만 있게 된다는 뜻으로,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7조(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 ①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시민민주주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위원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계획에 관한 사항
 5.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9.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시장 소속으로 설치한다.

제8조(사무기구 및 소속 직원)

- ① 위원회 산하에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을 두며, 그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는 각각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 ② 사무기구에서는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시장이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고, 위원은 비상임으로 위촉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2.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예산, 협치, 혁신 등 소관 실·본부·국장 또는 기획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률·회계 등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 중 심의·조정 등과 관련한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조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전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조정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으로서 회의를 운영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운영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무기구 중 회의에 상정된 의안의 소관 부서장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회의결과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시민협력국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 관련 조례와 법률 근거 마련 및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없이 예산 편성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관련 조례 개정 및 조치에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6) 시민참여예산사업 관련

- 시민협력국은 시민이 직접 신규사업을 제안, 심사,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참여예산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년도 시민협력국 소관 사업으로 2개의 사업(시민민주학습과 모더레이터 양성 프로그램, 시민토론회 ‘100인 100색’)이 편성된 것과 달리 2022년에는 시민협력국 소관 예산에는 시민참여예산이 편성된 바 없음.

- 2022년도 시민참여예산은 자치구에 지원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총 22개 사업이 선정되어 각 실·국·본부에 132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지난 2021년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28개 사업, 157억 2천 9백만원 대비 16.0%인 25억 8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시민참여예산제가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높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인 만큼 제도의 취지와 달리 사업의 수와 예산이 위축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2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 편성 목록 〉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2022년 예산편성(안)액	담당부서
총 계			13,220,103	
1	보호시설 퇴소아동 경계성 발달장애인을 위한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광역제안형	193,250	여성가족정책실
2	전통시장 홍보 에코백 지원	광역제안형	200,00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3	공공 와이파이 구축	광역제안형	1,000,000	스마트도시정책관
4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	광역제안형	2,400,000	스마트도시정책관
5	보라매안전체험관 지하철화재체험시설 강화	광역제안형	400,000	소방재난본부
6	고독사 유품정리 사업	광역제안형	250,000	복지정책실
7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스마트갈창 지원	광역제안형	390,000	복지정책실
8	자전거 도로 연결 및 정비	광역제안형	1,000,000	도시교통실
9	민간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산 지원	광역제안형	125,000	기후환경본부
10	다제약물복용 환자를 위한 스마트약통(기기) 보급	광역제안형	1,308,353	시민건강국
11	공항대로 노후 가로등 광원 교체 사업	광역제안형	200,000	안전총괄실
12	저소득층 출입문 보안 강화 사업	광역제안형	250,000	주택정책실
13	공공임대주택 야외운동기구 설치	광역제안형	246,000	주택정책실
14	은행나무 그물망 설치	광역제안형	725,000	푸른도시국
15	보라매공원 와우산 노후시설 정비	광역제안형	500,000	푸른도시국
16	한강공원 수변공간 조명환경 개선 공사	광역제안형	290,000	한강사업본부
17	강서습지생태공원 시설 개선	광역제안형	500,000	한강사업본부
18	한강 자전거길 옆 초화류 식재	광역제안형	150,000	한강사업본부
19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정비	광역제안형	1,800,000	한강사업본부
20	가양나들목 스탠드 지붕덮개 설치	광역제안형	282,500	한강사업본부
21	장애청소년 재활치료시스템 구축	민주주의서울 제안형	310,000	복지정책실
22	다회용 배달용기 활성화 사업	민주주의서울 제안형	700,000	기후환경본부

※ 출처 : 시민협력국 제출 자료 재구성

〈 2021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 편성 목록 〉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2021년 예산편성액	담당부서
총 계			15,728,982	
1	원예치유 프로그램 지원	광역제안형	200,000	경제정책실
2	장애인, 어르신과 함께 하는 행복한 나들이	광역제안형	337,500	복지정책실
3	공공시설 와이파이 증설	광역제안형	650,000	스마트도시정책관
4	스마트도시정책관	광역제안형	100,000	스마트도시정책관
5	돌봄시설 어르신을 위한 반려식물 보급	광역제안형	300,000	경제정책실
6	강북권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공공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등)을활용한다양...	광역제안형	160,000	도시재생실
7	방화터널 터널등 LED 교체	광역제안형	600,000	안전총괄실
8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	광역제안형	2,300,000	스마트도시정책관
9	효율적인 제설을 위한 송풍기 확충	광역제안형	500,000	안전총괄실
10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광역제안형	1,500,000	도시교통실
11	2021년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확대 사업	광역제안형	1,255,000	도시교통실
12	시공원 배수로 개선	광역제안형	162,000	푸른도시국
13	이동식 휠체어 경사로 지원사업 (무장애도시,그까이꺼경사로지원으로OK)	광역제안형	292,500	푸른도시국
14	염창산 환경 개선 사업	광역제안형	144,000	푸른도시국
15	공산근린공원 자연학습장 정비	광역제안형	216,000	푸른도시국
16	우리동네 마을마당 정비(은행나무 그물망 설치)	광역제안형	540,000	푸른도시국
17	시각장애이용 점자블록 보도 개선	광역제안형	3,450,000	복지정책실
18	중증장애인 기저귀교환대 설치 사업	광역제안형	50,000	복지정책실
19	느린학습자 커뮤니티케어센터 구축 시범 사업	광역협치형	676,881	평생교육국
20	ADHD아동·청소년 및 가족지원 정책	광역협치형	25,100	시민건강국
21	시민민주학습과 모더레이터 양성 프로그램	광역협치형	113,000	서울민주주의위원회
22	시민토론회 '100인 100색'	광역협치형	165,000	서울민주주의위원회
23	오뚜기(행주산성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광역협치형	190,000	복지정책실

24	시민MCN 기반구축	광역협치형	243,000	시민소통기획관
25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떴다 노래방	광역협치형	344,001	노동민생정책관
26	지역문화 인재(마을 큐레이터) 양성사업	광역협치형	370,000	지역발전본부
27	청년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증대 SNS 홍보 프로젝트	광역협치형	400,000	노동민생정책관
28	퇴원 노인의 일상생활복귀를 위한 중간집 시범 운영(서울 서부권역)	광역협치형	445,000	복지정책실

※ 출처 : 시민협력국 제출 자료 재구성

7) 종합검토의견

- 시민협력국은 2022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서울형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을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으로 통폐합)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소관 민간위탁기관 전체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일괄 삭감하는 등 자치구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예산 감액에 따라, 비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러오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예산편성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지난 6월 조직개편 이후 존속기한(2021.7.24.)만료로 종료된 ‘서울민주주의 위원회’가 관련 조례에 아직까지도 설치 강행규정으로 남아있는 등, 시민협력국은 관련 조례 정비뿐만 아니라 명확하고 논리적인 절차와 근거에 의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뤄지도록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 법 조 사 관	김 민 정
---------	-------	-----------	-------